

제8권 제1호

장애인복지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목 차

1.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1
이동석	
2.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 효과성에 관한 연구	21
백삼현	
3. 장애인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37
이은선	
4.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 두려움에 관한 고찰	73
오봉욱 · 전동일	
5.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7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	
정원일 · 김윤미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8, No. 1, 1-19.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 동 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는 고용관계와 신체적 활동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못 되는 등 급여의 다양성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매월 정산을 하여야 하고, 국가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통제하는 등 급여사용의 유연성은 부족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 담당자만 필요한 정보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서비스 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보다 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관계를 넘어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 선택이 가능해져야 하고,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전제로 가족고용도 필요하다. 정산기간은 반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임금계약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별도 지원조직에 의해 무료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주도성, 선택과 통제권, 급여사용의 융통성, 지원시스템

I. 서론

정부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다 세밀화 된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과거의 제공자중심서비스체계보다는 이용자중심서비스체제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해졌다(김용득 편, 2016). 과거의 제공자중심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지만, 당사자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 적극적 주체가 되고 있다(Duffy, 2005). 서비스에 사람의 욕구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arr, 2010). 다시 말해 현행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와 같은 이용자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제도로 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¹⁾는 급여형태로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급자중심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 현물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자의 주도성이 다소 증진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과 통제권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이동석, 2012; 김희자, 2013; 박주연, 2013).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춰 편법 혹은 변형 이용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정부는 부

1) 활동지원제도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과 욕구조사 그리고 외국제도 사례들이 소개되었고(정중화, 2001; 강희숙, 2004), 활동보조사업 시범기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활성화 방안,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쟁점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김경미, 2005; 최윤영, 2005; 우주형, 2005; 정중화, 2006; 조한진, 2005; 심경숙, 2006; 박찬오, 2006; 정일교, 2007),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이후에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이후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민아, 2007; 양희택, 2007; 이기윤, 2007; 정중규, 2007; 이익섭 외, 2007; 이슬기, 2007; 이동영, 2010; 원소연, 2010; 이채식, 2011; 김성희·이송희, 2012 등)(이동석, 2012 재인용).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과의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있었음(김경민 외, 2013; 전지혜, 2015 등).

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 27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방지가 있을 정도이다.²⁾ 부정수급의 문제는 이용자의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지 못한 제도의 한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선택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박주연, 2013).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고, 이를 위해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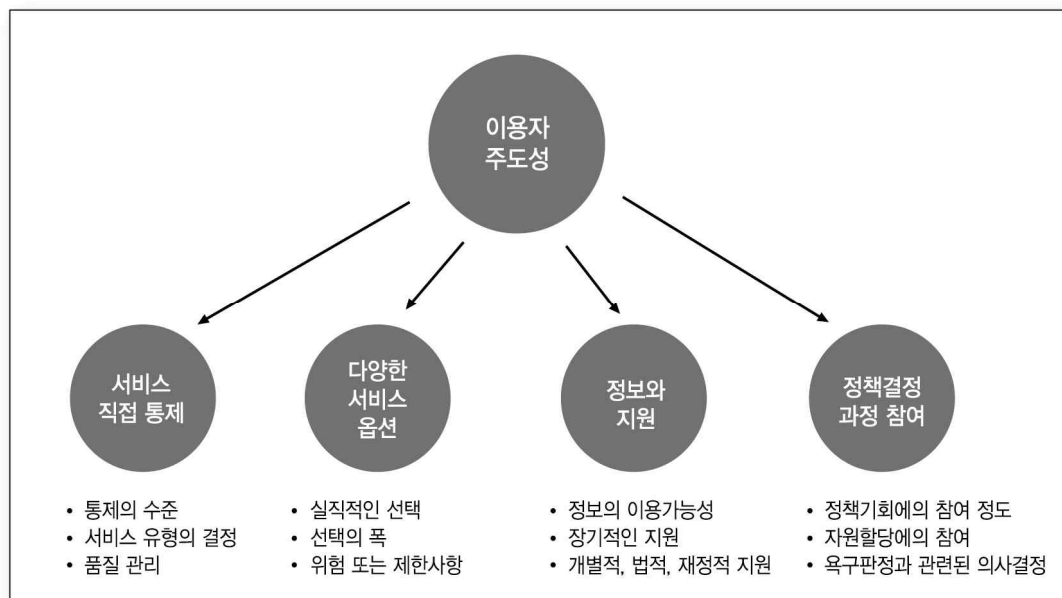
현재 다소 유연성이 떨어지는 바우처 방식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Glasby and Littlechild, 2009), 급격한 제도 변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바우처 방식 내에서도 이용자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택과 통제권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주도성의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현 바우처 방식 내에서도 적용가능하고 또한 개인예산제도로 전환한 이후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정부 홈페이지(www.normal.go.kr)를 참조하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부정수급 건수는 2,390건이고 환수액은 6억 6,7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II. 분석을 위한 틀 - 이용자 주도성

1. 이용자 주도성의 개념과 요소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 주도성(User Direction)이란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의 원칙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의 철학적 가치를 의미한다(김희자, 2013).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주도권이 실현됨을 의미한다(이재원, 2008). 이때 이용자 주도성은 그림처럼 서비스 직접통제, 다양한 서비스 옵션, 정보와 지원,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같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osciulek, 1999).



[그림 1] 이용자 주도성의 구성요소

출처: Kosciulek(1999)

첫째, 서비스 직접통제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의 근무와 성과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의

미한다. 이는 바우처 방식 또는 현금지급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옵션은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둘 이상의 옵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또한 선택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선택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셋째, 정보와 지원은 실질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용자가 선택을 하고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과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보나 지원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별로 지원체계와 옹호기관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이용자 주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Yoshida, Willi, Parker, and Locker, 2004).

넷째,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자 선택과 통제권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아주 소극적 의미로 보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일정 계획 등 개인적인 지원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로 보면 정책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Kosciulek(1999)은 적극적 의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 요소 중 서비스 직접통제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방식과 서비스 양, 제공시기,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바우처 시스템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예산방식으로의 변경을 논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 또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체계 개편 자체의 논의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물론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용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의 선택 사항이 풍부하여야 하고,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함께 발전되어야만 한다(Arksey and Kemp, 2008). 이에 따라 현재 바우처 방식 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 주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택의 정도와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의 정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서비스 옵션

다양한 서비스 옵션은 우선적으로 급여 품목의 다양성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선택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여사용방식도 유연해야 한다(이동석, 2015a).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옵션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의 다양성 정도와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의 다양성 정도는 급여 이용의 범위, 시설서비스 이용가능여부, 활동보조인의 선택 가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는 정산의 엄격성 정도와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1〉 다양한 서비스 옵션

구분	고려 요소
급여의 다양성 정도	• 급여 이용의 범위 • 시설서비스 이용가능여부 • 활동보조인의 범위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	• 정산의 엄격성 정도 •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

1) 급여의 다양성 정도

급여 이용의 범위는 고용관계에 국한하여 지출이 되는 고용주 권한에만 제한되는지, 이에 더해 고용관계 없이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의 구입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욕구에 한정되는 대인서비스에 제한되는 경우에서부터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다양성은 급여를 받아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보다 시설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더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주말 돌봄, 휴가 돌봄 등과 같은 단기적인 주거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영구적인 시설거주 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다(Ungerson and Yeandle, 2007).

그리고 급여의 다양성은 고용 가능한 활동보조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주로 친족고용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

용자가 독립적인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자식, 부모 등을 포함한 가까운 친족을 고용할 수도 있다(Ungerson, 2004).

2)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

정산의 엄격성은 급여사용 이후에 정산의 포괄정도와 정산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정산의 포괄정도는 본인이 사용한 급여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 등처럼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엄격한 것이고, 일정 정도에 대해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면 정산의 엄격성이 약한 것이다. 또한 정산의 엄격성은 정산 시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정산하고 이번 달에 사용하지 못한 급여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산이 상당히 엄격한 것이다. 하지만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하면 3개월 내에서 본인의 재량에 따라 매달 다르게 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정산의 주기가 1년이라면 1년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월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이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장애인이 여름에 휴가를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이용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의지대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월 정산을 하는 경우 휴가 등의 이유로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는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또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한 제공자 사이에 임금을 협상할 수도 있고, 국가가 지정된대로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즉 정부가 정한 단가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와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단가가 정해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용자와 제공자가 임금을 협상할 수 있는 경우에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와 지원

고용주가 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행정적 의무, 질병 대체 또는 휴일 대체 근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에 따라, 이용자들은 고용주가 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자기주도지원의 이념을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모집, 고용 계약 작성, 임금대장 작성, 재정적 또는 행정적 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Yoshida et al., 2004). 결국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정보나 지원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다.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제도 내 정보제공과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는 <표 2>처럼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다양성 및 전담 정도, 지원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지원 내용의 다양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표 2〉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

구분	고려 요소
정보와 지원 시스템의 기능 정도	•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다양성 및 전담 정도 • 지원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 지원 내용의 다양성

우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이 있어야 지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조직이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성격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양하다. 사례관리자가 정보제공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정보 제공에 의해 이용자를 통제할 수도 있다. 사례관리자가 아닌 정부조직의 다른 직원이 지원할 경우 사례관리자의 지원보다는 지원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을 것이다. 지방정부 외부에서의 지원은 더 수준이 높을 것이다. 외부 조직의 경우 대부분 이용자 집단이나 옹호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에 대한 접근이 무료로 이루어지는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접근성은 더 좋아질 것이고, 지원의 기능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방식은 구분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지원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이용자가 지원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는 방식이 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반면,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지원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Ungerson and Yeandle, 2007).

그리고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지,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를 중개하는 지원을 제공하는지, 세무 등 재정 관리를 포함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기능정도가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단순정보제공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포괄하는 경우 지원의 기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이용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를 앞서 살펴본 이용자 중심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용자 중심성의 네 개 하위요소 중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평가하기에 부적합한 두 개 요소를 제외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과 정보 및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1. 다양한 서비스 옵션 측면

다양한 서비스 옵션은 급여의 다양성 정도와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 중 급여의 다양성 정도는 급여이용의 범위, 시설서비스 이용가능여부, 활동보조인의 범위에 따라 평가하였고,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는 정산의 엄격성 정도와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다양한 서비스 옵션 평가 및 개선방향

구분	고려 요소	평가	개선방향
급여의 다양성 정도	급여 이용의 범위	일부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신체적 지원에 한정, 고용관계에 한정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하고 다른 사회 서비스나 재화까지 구입 가능 필요
	시설서비스 이용가능여부	시설서비스 선택 불가능	- 일부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선택 가능 필요 - 장기적으로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중 선택 가능 필요
	활동보조인의 범위	- 기관소속 활동보조인만 가능 - 가족 불가능	가족까지 확대, 다만 공식적인 노동관계 성립 필요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	정산의 엄격성 정도	100% 정산 - 한 달의 정산기간	- 급여범위확대 시 일정범위에 대한 정산의 유연성 필요 - 반기 또는 일년으로 기간 연장 필요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	정부가 고시한 단가대로 임금 계약	임금계약의 자율성 확보, 다만 중증장애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한액 설정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준수 필요

1) 급여의 다양성

(1) 급여 이용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크게 대별된다.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이다.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이다.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결국 고용관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지원처럼 일부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불허하기도 한다. 또한 여행을 가는 경우 지원금으로 활동보조인의 숙박이나 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완전한 사회적 활동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는 그러하지 못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는 완전한 사회적 활동까지의 지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고용관계에 국한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더 급여이용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급여를 보다 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사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대신 주방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욕실을 개조할 수 있도록 급여사용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갈 수 있음에도 택시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보다 저렴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체육관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 레저 활동, 또는 주방보조기구 장비 설치, 택시 등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처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시설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시설서비스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인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과도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서비스와도 단절되어 완전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아니라는 자립생활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심지어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잘못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삶보다는 거주시설로의 입소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생활수준에 의해서만 거주시설 입소가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활동지원 인정조사에 의해 일정 정도의 점수가 되어야만 거주시설 또는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설화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활동보조인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에서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자립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제공인력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선택지의 하나로 넓혀 놓고 장애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른 활동지원 인력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을 작성하고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족 활동보조인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문제는 사회화된 돌봄의 문제를 다시 재가족화하는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 측면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활동지원인력으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별로 다양하다(이동석, 2015b). 영국의 1990년대 영국의 돌봄서비스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 인력으로 고용이 안 되었으나, 현재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비동거 가족구성원의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배우자, 가족 등도 활동보조인으로 고용될 수 있다. 이 때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가정 밖 노동권을 침해하고 다시 가정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재)가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고용관계의 틀 내에서 지원에 대해 공식적인 지불을 할 수 있다면 가족화의 우려는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하여도 관리 방식에 따라 가족화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자립생활 모델의 차원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고용을 허락하는 경우, 지원과정에 대한 권력과 통제가 가족관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결국 이용자가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불받은 현금이나 바우처를 사용한다면 권한강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 정도

(1) 정산의 엄격성 정도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사용한 모든 급여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매월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달에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다음 달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정산의 엄격성 정도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엄격하여 급여사용방식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산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고용관계에 한정하는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한 100% 정산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에 택시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면 일정 부분(예, 15%)에 대해서는 정산의 엄격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처럼 정산기간을 한 달로 하는 것은 이용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되 정산기간을 최소 반기, 또는 일 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2) 임금계약의 자율성 정도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고시한 단가대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동력이 덜 필요한 장애인 모두 동일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중증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배제 문제는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활동보조 단가를 이용자와 활동보조 노동자 사이의 자율 계약에 맡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때 이용자에게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 선택권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계약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권 보장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자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한액 설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2.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

정보제공과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다양성 및 전담 정도, 지원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지원 내용의 다양성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 평가 및 개선방향

구분	고려 요소	평가	개선방향
정보와 지원 시스템의 기능 정도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다양성 및 전담 정도	• 활동지원기관의 담당자가 지원제공	• 별도 지원조직에 의한 지원 필요
	지원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 무료이기는 하지만, 제공자 에 대한 지원도 없음	• 별도 지원조직에 대한 직접 지원 후 무료 이용
	지원 내용의 다양성	• 정보제공, 중개서비스 제공	• 개인예산제도로 변경 시 정보제 공, 중개서비스 외에 각종 행정서 비스 등 제공

1)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다양성 및 전달 정도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에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은 활동지원기관이다. 기관 내의 코디네이터가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 사례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은 조직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이용자를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이용자 조직인 퍼살도(Per Saldo)가 정보제공, 중개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스톡홀름 협동조합(STIL) 등과 같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협동조합 및 일부 민간회사들도 이용자를 위한 훈련 및 동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활동지원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이용자집단인 IfA와 같은 기관도 활동지원인들이 대다수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코뮤날(Kommunal)과의 임금협상을 주도함으로써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Ungerson and Yeandle, 2007).

따라서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별도의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가 바람직 한데, 현재 일부 자립생활센터들이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초기에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하다가 활동지원제도가 개인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활동지원기관보다는 이용자 지원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기관의 정보와 지원 제공서비스는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따로 활동지원기관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활동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접근이 무료로 이루어지되,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 급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원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지원 내용의 다양성

현재 지원 내용은 정보제공 등 상담과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바우처 방식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내용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도로 전환할 경우 세무 등 재정 관리를 포함한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이용자 주도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라 이용자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다양한 서비스 옵션 정도는 고용관계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관련된 서비스 및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자립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가정이나 탈것을 개조하거나, 가정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활동지원급여의 목적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한정하기 보다는, 자립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활동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예산제도 시행 시 이용자 혼자 지불정산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금급여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정부가 별도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고용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족구성원의 비공식 돌봄을 사회서비스체제 안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품질보장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안고 있다(김희자, 2013). 서비스 소비자가 의사결정 역량에 취약성이 있을 때 자율성의 확대가 안고 있는 기만 및 학대 등의 위험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사회서비스 안에 수용하는 것이 우려할만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친숙한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품질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촌 등의 지역에서는 좋은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고용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고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의 폭은 넓히되, 엄격한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처럼 가족 구성원일지라도 엄격한 고용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면(이동석, 2015a), 의존으로부터의 독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폭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바우처 방식이건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예산제이건 지급받은 급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국가가 사례관리자나 지원계획을 통해 이용자를 통제하였다면 통제권한을 이용자에게 과감히 양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반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자유시장이 되도록 규제를 모두 없애서도 안 된다. 이용자 중심방식은 사회서비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책임성과 품질 보장을 확보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자율성의 확대와 함께 사기, 기만, 학대 등의 위험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재원, 2008). 따라서 선택기제로서 시장의 기능이 존재하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장의 속성을 경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민·가용현·장세철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어일문학**, 58: 275-292.
- 김용득 편 (2016). **장애인복지 -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EM커뮤니티.
- 김희자 (2013).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이용자의 욕구분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박주연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15호.
- 이동석 (20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8: 127-145.
- 이동석 (2015a).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8, 49-74.
- 이동석 (2015b).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편 - 주간활동급여 및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이재원 (2008).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1-28.
- 전지혜 (2015).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장애인활동보조제도와 장애인케어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255-278.
- Arksey, H. and Kemp, P. A. (2008). *Dimensions of choice: a narrative of Cash-for-Care schemes*. Social Policy Research Unit, The University of York.
- Carr, S. (2010). *Personalisation: a rough guide (2nd revised edition)*. London: SCIE.
- Duffy, S. (2005). *Keys to citizenship: A guide to getting good support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Birkenhead: Paradigm.
- Glasby, J. and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utting personalisation into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 Kosciulek, J. F. (1999). Consumer direction in disability policy form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 delivery, *Journal of rehabilitation*, 65(2), 4-9.
- Ungerson, C. (2004). Whose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sh for care schemes, *Ageing and Society*, 24, 189-212.

- Ungerson, C. and Yeandle, S. (2007). *Cash for 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Palgrave Macmillan.
- Yoshida, K., Willi, V., Parker, I. and Locker, D. (2004). The emergence of self-managed attendant services in Ontario: an independent living model for Canadians requiring attendant servic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Health Care*, 22, 177-204.

Analysis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User Direction

Lee, Dong suk

(SungKongHoe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intensify the user direction. As a resul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eems to be not flexible to users and has no sufficient support system. Therefore, firstly, service needs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and include the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and agency based services in the community. Secondly, a family member can be chosen as a care worker if he or she can make a labor contract with user. Thirdly, the period of benefit usage needs to be longer. Finally, separate support agencies should provide various services 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and brokerage services for free.

■ **key word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 User direction, Choice and control, Usage flexibility, Support system

논문투고일 : 2017. 4. 27.

논문심사일 : 2017. 6. 19.

개재확정일 : 2017. 6.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8, No. 1, 21-35.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 효과성에 관한 연구¹⁾

명도복지관 백 삼 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남 M시에 위치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25명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캠핑, 스포츠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 총 5개의 어울림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어울림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은 단위프로그램별 사전·사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비장애인 169명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에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와 장애인식개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스트레스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 장애인식개선 설문은 비모수 상관분석방법인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제시하였다. 각각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체험이 .01, 캠핑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개선은 스포츠태킹대회가 .001, 영화관람이 .01, 문화체험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핑, 등산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별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해소와 장애인식개선의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향후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 및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적장애인, 스트레스, 장애인식개선, 어울림프로그램

1) 2016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젠다 배분사업 장애인식개선 “The One”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I. 서론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장애인은 약 4.83%(2015년 12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없어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집밖으로 나오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으며, 이들의 이동경로와 집결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김미경, 2003).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친척 등에 장애인이 없어 평상시 장애인과 접촉 할 경험이 없는 비장애인 일수록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홍승미, 1998)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세계인구의 10%가 장애인이며, 장애인 중 80%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예로부터 사회적 차별과 경시,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그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어렵고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으며 인간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였다(황미라, 2007). 지적장애인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수용하고 통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해야 한다(Nirje, 1985 재인용). 강수균, 조홍중(2003)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시도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상물과 도서를 활용한 교육이나 장애체험,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 장애관련 영화, 체육대회 등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되었다(우이구 외, 2001) 이중 체육대회나 체험활동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슬픔, 절망, 흥분 등을 상호간 접촉을 통해 느낄 수 있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김진구(2001, 재인용)는 체험학습을 현장에서 관찰, 수집, 견학, 관람, 탐방, 실습, 수련 노작, 봉사,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구체적, 경험적 지식을 통해 살아있는 학습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전수경(2008), 김유리(2012)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체험, 토의, 장애관련 동영상관람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교육이나 정보제공, 토의 등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과 체험, 어울림 행사, 스포츠여가 및 문화행사 등 장애인과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프로그램으로 나누게 된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어울림프로그램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의 진행과 경비, 의도, 참가자 모집 등이 번거롭고 장애에 대한 무관심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란 특별한 환경에서 느끼는 압박이나 불편함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의사 표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해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사회적응과 자기관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부적응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고영숙, 2003에서 재인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개인의 생리적, 인지적, 환경적 취약성 및 스트레스 반응성에 따라 심리, 행동적 접근법, 신체적 접근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선택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으로 복합적인 적용이 효율적인 관리로 본다고 하며, 김윤미(2015)는 음악과 근육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확인하였다. 전유진(2015)은 스피닝 운동프로그램, 문현미(2013)는 난타프로그램, 김병호(2017)는 줄넘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백삼현(2016)은 가상현실프로그램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연구로 첨단장비인 스트레스체크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고 인터뷰에 정확한 자기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형제, 특수학교 교사, 복지관 종사자 등 지적장애인과 관계된 집단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보다 주변인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최근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스

트레스 해소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며 객관적인 도구,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선택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에 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캠핑,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 등 영역별 스포츠, 여가, 문화, 경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성 프로그램의 직접경험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과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해소와 관련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M시에 위치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중 건강하고 보행이 원만한 신청자 2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며, 비장애인은 M시에 거주하는 자로 1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본 어울림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장애등급	총인원
장애인	29.6±6.03	남 : 16명 여 : 9명	지적장애 1급 : 8명 2급 : 11명 3급 : 6명	25명
비장애인	10대 : 62명 20대 : 23명 30대 : 24명 40대 : 25명 50대 : 32명 60대 이상 : 3명	남 : 76명 여 : 93명	없음	169명

2. 연구절차 및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캠핑, 스포츠스테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으로 총 5개의 단위프로그램을 구성되었다.

〈표 2〉 어울림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명	진행시기	장소	인원 (장애인)	인원 (비장애인)
	2016년 10월 (1박2일)	변산 내소사/고창 선운사 (카라반 이용)	25명 (2명 예러)	25명 : 10대-16명 20대-9명
스포츠스테킹 대회	2016년 11월 (당일)	명도복지관 강당	21명	71명 : 10대-37명 20대-1명 30대-14명 40대-17명 50대-2명
영화관람	2017년 2월 (당일)	목포CGV-공조	25명	25명 : 20대-5명 30대-10명 40대-3명 50대-7명
등산	2017년 3월 (당일)	압해도 송공산	25명	28명 : 40대-5명 50대-23명
문화체험	2017년 4월 (1박2일)	에버랜드, 남대문시장, 여의도 꽃 축제장	25명	20명 : 10대-9명 20대-8명 60대 이상-3명

프로그램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스트레스검사(프로그램진행 직전, 프로그램종료 직전)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확인하였고, 비장애인 총 169명이 프로그램 종료 전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의 단위프로그램별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2〉과 같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1) 스트레스

스트레스체크기는 (주)트라이스의 헬스체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측정 전 약 3-4분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자는 오른쪽 검지를 헬스체크 광센서에 위치한 다음 개인신상정보(성별, 나이)를 입력한 후 스트레스를 체크한다. 체크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되며 측정 시 검지를 움직이거나 심박수가 60-90박을 벗어나면 측정오류가 발생되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체크기는 혈액이 심장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 기시부에 밀려나왔을 때 발생한 혈관내의 압력변화가 말초방향으로 전해져 갈 때 1분 동안 또는 일정기간의 횟수를 계측하는 장치로 분광 측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두 개 고유파장이 빛의 농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는 첨단 측정 장비이다.

2) 장애인식개선

민미년(2003)이 사용한 설문지를 황미라(2007)가 재구성한 것을 재인용 및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개인 신상 2문항, 장애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5문항,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총 5개의 단위프로그램에서 측정된 스트레스와 장애인식개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1)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수가 작고, 관측값의 정규분포성이 가정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적용하였다.

2)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의 설문지 자료 분석을 위해 참여자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비모수 상관분석방법인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스트레스의 변화

단위프로그램은 캠핑,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 총 5개의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단위프로그램별 사전·사후 스트레스 검사의 변화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단위프로그램별 스트레스의 변화

프로그램	사례수	사전		사후		Z (사후-사전)	유의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캠핑	23	8.38	1.54	7.47	1.19	-2.298	.022*
스포츠스태킹 대회	21	8.21	1.38	7.83	1.96	-.589	.556
영화관람	25	9.36	1.39	8.90	1.36	-.972	.331
등산	25	8.39	1.17	7.93	1.15	-1.590	.112
문화체험	25	8.24	1.40	7.15	1.35	-2.614	.009**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결과, 문화체험은 .01수준에서, 캠핑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값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문화체험 및 캠핑프로그램은 조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스포츠스태킹 대회(-0.38) 영화관람(-0.46), 등산(-0.46) 각각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식개선의 변화

단위 프로그램은 캠핑,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 총 5개의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단위프로그램별 장애인식의 변화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단위프로그램별 장애인식개선의 변화

프로그램	사례수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	유의확률
캠핑	25	.222	.286
스포츠스태킹 대회	71	.703	.000***
영화관람	25	.504	.010**
등산	28	.162	.411
문화체험	20	.469	.037*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 값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스태킹대회가 .001수준에서 영화관람이 .01수준, 문화체험이 .05수준에서 참가자들의 장애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의 평균값과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묻는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캠핑, 등산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장애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의 평균값과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묻는 평균값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어울림프로그램으로 캠핑,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으로 총 5개의 단위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스트레스의 변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먼저 장애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결과는 문화체험은 .01수준에서, 캠핑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스태킹대회(-0.38) 영화관람(-0.46), 등산(-0.46) 각각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식의 변화결과는 스포츠스태킹대회가 .001수준에서 영화관람이 .01수준, 문화체험이 .05수준에서 참가자들

의 장애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의 평균값과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묻는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핑, 등산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장애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의 평균값과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묻는 평균값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문현미(2013)는 지적장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으로 나누어 12주간, 주 4회, 회당 40분씩 난타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윤미(2015)는 지적장애인 36명을 대상으로 근육이완기법(MPMR), 음악감상(ML), 점진적 근육이완기법(PMR)으로 12명씩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사전·사후 스트레스 자가진단VAS(Visual Analogue Scale)를 측정한 결과 신체프로그램인 근육이완기법(MPMR)과 점진적 근육이완기법(MPM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감상(ML)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주간 지적장애인 26명을 대상으로 운동집단 14명, 통제집단 12명으로 나누어 주 3회, 회당 50분 줄넘기운동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체혈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검사를 실시한 결과 Dopamine의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박 2일로 구성된 캠핑과 문화체험에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가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간 진행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 흥분, 믿음, 친근감 등의 감성적인 부분과 일상생활과 다르게 압박과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편안함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프로그램별 스트레스의 변화는 운영형태와 진행방법, 흥미정도, 진행시간, 자원봉사자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그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효선(2002)은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장애정보제공, 만화와 비디오를 통한 교육, 장애극복 사례, 장애체험활동, 집단토의 등)을 총 8회, 회당 40분씩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와 학교생활, 개인생활, 취미, 오락, 기타 생활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승진(2009)는 문화체험활동(음악공연관람, 미술전시회 관람, 장애인체육대회 관람, 장애인 주제 영화관람)을 선별하여 체험 후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보면 태도요인, 수용성요인, 활동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미라(2007)는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10회기, 회당 50분씩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 참여 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녔던 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창화(2008)는 118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중심, 활동중심, 인지-활동중심의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문화체험에서 장애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장애인이 본 연구 이전 장애인과의 관련된 경험이 없는 참가자와 연령대가 적은 참가자들에서 장애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위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연령대가 낮은 참가자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변화가 없었던 것은 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와 진행방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장애인식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회 행사성 어울림프로그램이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함께 어울려 장애라는 특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오히려 좋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 영역과 장애인식개선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남 M시에 위치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25명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캠핑,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등산, 문화체험, 총 5개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가한 비장애인은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참여하였다. 본 어울림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은 단위프로그램별 사전·사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비장애인 169명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에 변화를 확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성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의 변화는 문화체험($p < .01$)과 캠핑($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스태킹대회, 영화관람, 캠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사성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의 변화는 스포츠스태킹대회($p < .001$), 영화관람($p < .01$), 문화체험($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핑과 등산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별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에 과학적인 측정도구를 도입하여 장애당사자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균, 조홍중(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고영숙(2003).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경도 정신지체 학생의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3).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재활의 샘 제16호 p167-189
- 김병호(2017). 12주간 줄넘기 운동이 지적장애인의 혈중지질 및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 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미(2015). 음악과 점진적 근육 이완 기법 적용에 따른 직업재활 과정 성인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반응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구(2001). 초등실과교육의 현장학습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02). 통합적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미(2013). 난타북을 이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미년(2003). 초등학생에 대한 장애관련 독서활동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효과.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진(2009).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문화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삼현(2016).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p109-120
- 우이구 외(2004). 중·고등학생 장애이해교육. 경기 : 국립특수교육원.
- 이창화(2008). 장애인식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경(2008). 장애이해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상관관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유진 (2015). 스피닝 운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홍승미(1998).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태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미라(2007).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일반 고등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Nirje, B.(1985). "The basis and logic of the normalization principle"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Development Disabilities, 11, pp,65-68.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izing Program in Stress Relieving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of Non-disabled people

Back Sam Hyun

(Myongdo Welfare center)

【Abstract】

In this research, 5 socializing programs in total (camping, sport stacking tournament, movie watching, hiking, cultural experience) were conducted for 25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people using M welfare center in M city, Jeollanam-do.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tested for change of stress level before and after each program using health checker, stress measurement equipment. As well, the questionnaire was used to confirm the change of disability awareness of 169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stress level and awareness improvement on disabilities, this research used SPSS 21.0. Wilcoxon Signed Rank Test, which is non-parametric statistics, was applied for stress level, and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which is non-parametric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questionnaire regarding awareness change on disabilities. Each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cultural experience at .01 and camping at .0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ports stacking tournament, movie watching, and mountain climbing. In light of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i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ports stacking tournament at the level of .001, movie watching at .01 level, and cultural experience at .05 level. On the other hand, camping and mountain climbing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Theses results prove that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stress level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of the non-disabled people through socializing program. A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stress relieving and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could be emphasized by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izing programs

in stress relieving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In the future, a variety of new programs for stress relieving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should be developed and conducted.

- key words :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tress, improvement of disability awareness, socializing program

논문투고일 : 2017. 4. 28.

논문심사일 : 2017. 6. 19.

게재확정일 : 2017. 6.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8, No. 1, 37-72.

장애인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이 은 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경험한 심리적응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령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구성요소, 17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다시 넘어야 하는 산(山)’은 학령기 장애아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다. 이 본질은 ‘경제적 부담’,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음’, ‘몸만 자라는 아이’, ‘걱정되는 미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아이가 주는 희망’은 장애아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녀의 요인으로 ‘나아지고 있는 아이’, ‘적응해 가는 아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장(家長)의 자리’는 아버지 자신의 요인으로 ‘미안함이 가져다 준 변화’, ‘아버지라서 견뎌’, ‘가장의 책임감’, ‘존재 그대로 인정’,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네 번째, ‘주변의 도움’은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의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아버지 적응의 결과로 나타난 ‘지금의 행복’은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감’, ‘아이가 따라 나도 성장’, ‘이대로도 좋아’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 장애아 아버지, 심리적응, 현상학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를 수정 및 요약한 것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과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모든 장애아동의 부모가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적응상태에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좌절과 실패의 경험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갈등과 새로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심리적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구조적으로 대처하는 과정(Roy, 1976)이며, 적응이 개인에게 부과된 내·외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개인 내에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Tucker, 1980). 효과적인 적응은 인간이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절히 대처 할 때를 의미한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적응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모델 중 부모들의 심리적 태도변화를 가정한 단계이론은, 자녀의 장애를 처음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수용하기까지 반드시 겪는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이론은 장애 수용 초기에 부모들이 보이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반응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다음에 있을 적응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Burden, 1991). Olshansky(1962)도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여러 상황에서 거부하고 또 수용한다고 하였다.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보다는 적응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Berry 등(1983)은 부모의 심리적 적응상태가 순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으며, 2~3개의 적응단계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적응수준을 알아보려고 할 때, 단순히 긍정적 측면이 높다거나 혹은 부정적 측면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측면에 대한 고찰을 못하므로 심리적 적응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좌절감이나 실패감의 수준 역시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의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심리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족은 역동적인 체계로써, 장애아동 부모와 가족에게는 그들이 겪어야 하는 독특한 심리적 과정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부는 중요한 중심축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파트너로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양육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머니와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부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Lamb, 1987),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Gavin & Wysocki (2006)에 의하면, 적극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의 전체기능을 향상시켜, 장애 자녀가 있지만 가족 전체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장애에 대해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아버지는 장애의 장기적인 의미나 미래에 관한 문제(자립능력, 자녀 양육비용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적인 문제(자녀의 친구문제, 영양문제 등)나 양육과정에서 초래된 정서적 어려움에 더 많은 관심이 많다(Meyer, Vadasy, Fewell & Schell, 1982; Gumz & Gubrium, 1972). 또한 장애아동 아버지는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아이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김나영, 윤호열, 2000). 그러면서도 아버지들은 자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기뻐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높게 느끼며,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강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어려움과 갈등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적응의 수준과 개념도 다를 것이므로 아버지만의 고유한 경험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부수적인 변인으로 다루거나 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협소하게 다루면서 아버지 자신의 태도나 인식, 경험 등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불균형 문제는 여러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11년까지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아동 부모의 연구 동향에서 연구대상별 분석에서도(김이경, 2012) 어머니 109편, 아버지 3편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중 질적 연구는 부모21편, 어머니 31편, 아버지 0편이었다. 2007년 이후 아버지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연구가 활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장애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양육에 어머니들만큼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의 연구 참여가 어머니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가, 질문지 방법을 이용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경험하는 정서적 갈등이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어진, 2014). 이에 장애아동 아버지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 갈등과 더불어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장애아동 가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가족에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부적응적 영향에 대한 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연구자의 편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Crnic et al. 1983). 어떤 부모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원활한 가족 상호작용으로 장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장애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등 오히려 긍정적 측면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Singer & Farkas, 1989). 국내연구에서도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을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김상용, 2007; 최희정, 이인수, 2009; 홍정애, 2007). 이러한 연구들의 관점은 장애아동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고, 그 힘의 크기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며, 여러 가지 복잡하게 관련된 요소들이나 생각과 느낌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질적인 연구가 효과적이다(Padgett, 1998). 그럼에도 장애아동 부모와 관련된 질적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개별 부모에 초점을 맞춘 단일 대상 연구 혹은 질적 연구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김천국, 김진희, 2012; 이성용, 2014; 전미린, 2014; 정순돌, 김고은, 2010).

장애 아버지의 연구 중에서도 영유아기 장애자녀를 위한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다수가 진행되었다(김현주, 2014; 임경옥, 2011; 전영식, 2010; 조현근, 2015; 한남주, 2007; 황어진, 2014). 그러나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의 연구는 특수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연구가 전부이다. 김형준, 곽승철(2013)은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 1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후기구조주의 방법론으로 아버지의 존재론적 이해를 위한 연구를 하였고, 김정연, 윤형준(2013)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유형별 분석과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역할 인식 후 아버지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화 경험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또 다른 양육자인 아버지, 특히 학령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리적응의 경험 즉, 체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구조적 기술로 발전시켜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시점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기회이자,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응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학령기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구조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Morse와 Field(1994)가 모집단의 전형적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적절성’과 ‘충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 기준은 첫째,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을 둔 아버지로 한정했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나 일시적인 발달상의 문제로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둔 아버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이다. 둘째, 장애자녀 출생부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선정했다. 장애자녀가 생활시설에 입소했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자녀로 인한 아버지의 생생한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서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장애 진단을 받은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소급해서 수집하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정서적 재현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으로 다시 경험되기 때문이다(Morse, 2005; 양경애, 2010 재인용). 이는 장애를 인식한 시점에서부터 시간의 경과 속에서 아버지가 경험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아버지 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 연령에 의한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 때문이다(강윤영, 2006; 한혜순, 2005).

충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는 1~2회에 걸쳐서 60~90분으로 이루어졌고, 부족한 부분은 전화 통화나 메신저를 통하여 보충되었다.



3. 자료 수집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한 서술이고, 상황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경험의 서술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신경림, 2001).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정확하고 풍성한 서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조사 이전에 면접지침과 사전조사를 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 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Deborah,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전에 예비조사를 위해 1명의 연구 참여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 질문의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장애아동 아버지로서 심리적응의 경험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연구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용으로부터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다(Boyd, 1989).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을 그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다(Giorgi, 2009; Giorgi & Giorgi, 2003). 연구자는 Giorgi가 제시한 4가지 단계들에 따라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직관에 의한 현상학적 환원 태도를 취하고자 하였다.

1단계인 ‘전체 인식단계’는 연구자는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진술한 면담내용을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였고, 기술된 내용의 모호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2단계는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다. 개별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용에서 추출된 의미단위를 기술하고, 분류된 모든 의미단위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의미단위는 총 354개였다.

3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시키는 단계’로, 구분해놓은 의미단위를 서로 대조하면서 관련성을 찾고 반성과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4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를 구조적으로 통합단계’로, 변형된 의미단위의 통합과 재구성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5개 구성요소와 17개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와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자녀성별	자녀연령	자녀 장애유형	자녀(장애자녀)
1	45	대졸	자영업	유지	여, 여	9, 13	청각·시각 1급	2녀(2명)
2	47	대졸	자영업	유지	남	13	지적장애 3급	1남 1녀(첫째)
3	43	대졸	회사원	유지	여	8	언어장애 1급	1녀
4	44	대졸	회사원	유지	남	13	자폐성장애 2급	2남(첫째)
5	45	대졸	회사원	유지	남	8	지적장애 3급	1남 1녀(둘째)
6	48	박사	치과의사	유지	여	13	지적장애 2급	2녀(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령기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6명의 아버지로 중상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장애 자녀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2명과 초등 2학년에 1명, 6학년에 4명이 재학 중이다.

2.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상황적 구조

학령기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응 경험의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와 심리적응에 관한 구조를 제시하여 장애아동 아버지들이 경험한 심리적응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 단위들을 묶어서 17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

고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여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의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적응의 어려움	다시 넘어야 하는 산(山)	경제적 부담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음
		몸만 자라는 아이
		걱정되는 미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적응요인	아이가 주는 희망	나아지고 아이
		적응해 가는 아이
		어느새 훌쩍 커 있는 아이
	가장(家長)의 자리	미안함이 가져다 준 변화
		아버지라서 견뎌
		가장의 책임감
		존재 그대로 인정
		꺼지지 않는 희망
	주변의 도움	힘이 되어 준 사람들
적응결과	지금의 행복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감
		아이 따라 나도 성장
		이대로도 좋아

1) 다시 넘어야 하는 산(山)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들이 처음 장애를 인식하고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과 암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되어 간다. 그러나 아동이 자람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되면서 적응보다는 확산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학교문제, 친구 문제, 정서적·신체적 변화 등 새로운 장이 펼쳐지면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힘겹게 한고비를 넘었더니 다른 산이 딱 하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1) 경제적 부담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 배우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 공통으로 경제적 부담감은 아버지의 일차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의 부담은 장애아동의 장애와 연결되어 더욱 중압감을 느끼게 하였다.

“처음엔 돈이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수술만 하고 재활 치료 하고... 초기엔 잘 몰랐어요. 학교 입학 전까지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참여자 1>

“아이가 커서도 경제생활을 못할 거니까 내가 계속 더 벌어야 되고... 저는 저한테는 거의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최대한 아끼고 아끼죠.” <참여자 2>

“지금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스트레스가..... 월초가 되면 보통 다 입금을 하면 짹~ 하고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참여자 4>

(2)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음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처음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부터 갈등과 좌절의 경험을 겪었다. 일단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문턱이 높다. 특수교사의 문제, 시설의 문제, 학급 아이들과의 문제 등 거절당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큰아이는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겨우 입학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를 입학만 시켰는데도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받아만 줘도 너무 감사했죠.” “둘째는 정말 보낼 곳이 없어서 일인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방과 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받아서 1인 학교를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죠.” <참여자 1>

“학교에서는 계속 저희에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인을 줬는데, 여기를 그만두면 대체 어디로 보내야 되며... 제가 그 자리에서 매달리며 울었어요.... 막막했죠.” “아이의 장애를 알았던 순간보다 학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3) 몸만 자라는 아이

발달 장애아동의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들의 자녀들도 신체장애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적영역에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록 또래 아이들과 차이는 벌어지고, 부모들은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얼마 전에 아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학교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랬죠.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사람을 쿡 찌르거나 만지는 게 여자아이 부모들에게 문제가 됐었나 봐요. 우리아이는 그게 장난의 표현인데....” <참여자 2>

“덩치는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 아이의 모든 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요즘은 딸이 자라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제가 개입하기가 난처할 때가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참여자 6>

(4) 걱정되는 미래

아버지들은 공통으로, 장애아동이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지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현재는 가족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른이 되거나 부모 사후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사회에 기대할 수도 없어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장애로서 받는 차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차별이 심한 이 나라에서.... 그런게 제일 걱정이죠.” <참여자 1>

“지금도 힘들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죠. 부모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돌봐줄 것이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참여자 2>

“누나가 동생을 잘 챙겨주긴 하지만 나중이 더 걱정이죠. 지금이야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니까..... 큰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제가 경제적으로라도 넉넉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5)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자녀의 장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인식의 우려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 때문에 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외부 활동이 점차 줄어든다고 하였다.

“친구들하고 가족모임이 있으면 같이 갔었어요. 어릴 때는 엉뚱한 소리나 행동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서... 근데 점점 커가면서 제가 가족모임에는 잘 안 나가요. 다 아는 사람들이지 만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더라고요.” <참여자 2>

“아이가 상황에 안 맞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안 가게 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4>

“애는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나가는 게 싫어요. 아이의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렇고 싶지도 않고...” <참여자 5>

2) 아이가 주는 희망

자녀의 장애를 처음 접한 순간, 아버지들은 심한 충격을 겪으면서도 밖으로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대신 앞으로의 일을 고민한다. 1년 2년 세월이 더해가면서 내심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장애 자녀의 뒷바라지로 지쳐가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겪기도 한다. 삶에 지치거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장애 자녀의 변화는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1) 나아지고 있는 아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장애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였다. 적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증상의 호전을 통한 현상들이다.

“얼마 전부터 혼자서 버스 타는 걸 연습해서 다녀요. 아직은 누군가 태워줘야 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타야할 버스가 오면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집중해서 기다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너무 대견하죠.” <참여자 2>



“아직 비틀거리지만 뛰기도 하고, 부르면 쳐다보기도 하구요. 그래서 견딜 수 있죠. 아이가 더디기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희망을 계속 갖는 거죠.” <참여자 3>

“예전에는 의미 없는 말들을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꽤 구체적인 걸 ‘아빠는 거기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웃음) <참여자 4>

(2) 적응해 가는 아이

부모만 노력하는 게 아니다. 장애아동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적응해 간다. 그런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한다. 아이의 노력이 뿌듯하고 대견하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좋아 잘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삶에 기쁨이고 희망이고 행복이다.

“잘 안보이고 잘 못 듣는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떨 땐 눈물이 나려고 해요.” <참여자 1>

“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아이들 틈에 끼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죠. 어설픈 건 해도 그 자리에 있는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참여자 2>

“신기하게도 공부가 재미있대요. 우리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이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웃음) 그걸 지켜보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참여자 5>

(3) 어느새 훌쩍 커 있는 아이

아버지에게 장애 자녀의 사춘기는 낯설기만 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의 반응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은 속도로 커가는 것 같아 대견스러움이 더 크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져본다. 모든 게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같은 속도로 가는 것도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평범한 그 일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한다.

“어릴 때 생각하면 저렇게 커가는 게 고맙기도 하고... 지금은 다 컸다고 대들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는 게 서운하면서도 달리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참여자 1>

“엄마보다 더 큰 키로 엄마 어깨에 손을 딱 하니 올리고 있으면, 집사람은 무겁다고 난리지 만. (웃음) 많이 컸구나 싶죠. 부듯하기도 하고 잘 견뎠다 생각도 들고...” <참여자 2>

“큰 몸집으로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면 부듯하기도 하고, 저렇게 커 준 게 고맙기 도 하고... 엄마랑 낄낄대며 웃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정 말 평범한 가정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참여자 6>

3) 가장(家長)의 자리

(1) 미안함이 가져다 준 변화

준비 없이 어느 날 찾아온 자녀의 장애는 아버지에게 혼란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화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종일 장애 자녀에게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내를 외면하면서도 미안함에 어느새 슬그머니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이의 양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법을 터득해갔다.

“전에는 보통의 아빠들처럼 주말에 잠깐 놀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지금은 다른 아빠에 비해 많이 관심을 갖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유대감도 깊어지고, 아이들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

“첨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나는 날이 많았어요.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해외지사로 나갈까 고민도 하고... 어느 날 문득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가 내 화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내가 아이의 장애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어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은 화를 못내죠.” <참여자 3>

“아이가 어렸을 땐 화를 자주 내서 아내가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때는 저도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그랬던 거 같아요. 전에는 아내가 너무 극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내가 이해되더라고요.” <참여자 6>

(2) 아버지라서 견뎌

자녀가 장애일 경우 일반자녀를 키울 때보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더 많다. 가끔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냥 참는다. 특별한 방법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그냥 견디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해결 한다기보다는, 생각하고 해결방법 찾아보고 그럼 또 지나가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노력하면 애가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죠.” <참여자 2>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어떻게 했던 게 아니라...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아이 얘기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안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견뎌야죠. 스스로 풀고... 뭐 그냥 아با니까 하는 거죠.” <참여자 4>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가장으로서 생각하는 거죠. 아با니까...” <참여자 5>

(3) 가정의 책임감

아버지들은 가족을 지켜야하는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자녀의 장애는 아버지가 지녀야 할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자녀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다 걱정이죠. 집사람도 걱정이고 아이도 걱정이고. 둘째도 오빠로 인해서 삶이 바뀐 거 같아요. 평범하게 살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혼자 감당하더라도 집사람이나 둘째에게 나중이라도 부담을 안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참여자 2>

“제가 포기하면 아내와 아이는 어떡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참여자 3>

“아이 때문에 힘든 부분은 의도적으로 잘라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대신에 이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고... 그런 생각만 했죠.” <참여자 4>

“아이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짝한 마음이 들어요.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참여자 5>

(4) 존재 그대로 인정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자녀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접어 버리는 것만 같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루하루 견디어 내다보니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받아들임을 통해 자녀를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작은 변화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지금도 아주 가끔씩은 기적처럼 아이들이 정상이 되는 걸 바라기는 하지만 이젠 인정해요. 우리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났고, 해줄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이고 내 몫이다.” <참여자 1>

“남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의무교육이라 입학을 시키지 않으니까.... 미뤄왔던 장애인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건 받아야 겠더라고요.” <참여자 3>

“아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계속 화를 내고 있겠죠. 처음에는 수용한다는 게 포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되고 느리다는 걸 인정하니까 조금만 변화가 보여도 기특하고 신기하고 기쁘고 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5) 꺼지지 않는 희망

아버지들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더 보고자 노력한다. 면담에서 가장 불안함을 많이 보여준 연구 참여자가 희망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것들의 그림자가 걷히기 위해서는 그 크기와 무게만큼의 희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녀의 사소한 변화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자잘한 일상이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이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아이는 계속 커가는 중인데....’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절망이면서 동시에 희망이 된다.

“잘됐다. 한 애가 비장애면 힘들 텐데 같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더 나을 거라는 위안도 가졌었죠. 솔직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위안을...그렇게 믿어요” <참여자 1>

“절망이나 고통이나 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견딜만한 고통이죠. 그래서 좋은 면을 보죠.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이게 안 된다, 이런 것도 보는 반면, 조금씩 나아지는걸. 조금 못해도 그게 뭐 세상 사는데...” <참여자 2>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동동거린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아이처럼 느린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서 한 호흡 가다듬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가 늦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늘 한 구석에 희망을 두고 있죠. 잘 될 거라는....” <참여자 5>

4) 주변의 도움 ; 힘이 되어준 사람들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겪어오면서, 아버지들은 혼자서 많이 견디어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을 연구 참여자들은 첫 번째로 배우자를 꼽았다. 부부는 장애 자녀로 인해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아픈 시간을 함께했고, 서로 힘들어 싸웠던 증오의 시간도 있었고, 장애 자녀의 사소한 변화에 함께 감동하고 기뻐하던 순간들을 함께했다. 그래서 아버지들 모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장애 자녀의 양육에 있어 누구보다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힘들 때 집사람이 제일 도움이 됐죠.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텼고... 아마 집사람이 없었다면 전 도저히 견디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집사람에게 제일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잘 못 쳐요. 고생한 걸 아니까...” (웃음) <참여자 1>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죠. 24시간이 오로지 아이만 위해서 사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죠.” <참여자 3>

“애들 엄마하고 함께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위안이 되기도 했으니까.. 아이에 관해서는 동료애 같은 게 있죠.” (웃음) <참여자 5>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배회할 때 아내가 묵묵히 곁에서 지켜준 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미안함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참여자 6>

가족 친지 외에 아버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장애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녀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의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나쳤을 법한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동발달전문가인 지인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료방향이라든가 부모의 대처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죠. 아이치료 뿐만 아니라 부모치료까지 함께 해줬죠.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서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치료실이 많이 도움이 되요. 부모가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덜 미안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아요.” <참여자 5>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이의 변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조그마한 것이지
만 아이의 변화가 보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구요.” <참여자 6>

5) 지금의 행복

(1)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감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혀 당연한 현실이 아니다. 누구는 너무나 쉽게 가진 것들을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은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었기에, 적응되어갈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누구에게도 당연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인지 삶으로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치열했기에 아주 작고 흔한 것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해주었다.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장애가 아니었다면 못 느꼈을 것들을 가끔 생각하죠. 사소한 것들에 행복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요.”
<참여자 1>

“뭔가 좀 더 소중하게 생각 한다 그럴까요?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 내가 출근하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퇴근하고 오면 아내와 아이가 있고 아이가 날 보고 웃어주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참여자 3>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고 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가족들에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참여자 4>

“아주 소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아닌 걸 알게 되었네요. 제가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저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어쩌면 우리아이의 소원일 수도 있는 거고...” “지극히 평범한 것의 행복을 깨닫게 해줬죠. 우리아이가...” <참여자 5>

(2) 아이 따라 나도 성장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뼈아프게 경험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해간다. 아이들만 장애를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도 장애아동의 아버지로서 극복해야 할 많은 것들을 자녀와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아!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

했네요. 실은 그럴 여유가 없긴 했어요. 아이 때문에 많이 변했네요.’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 고통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은 최선의 방향을 찾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상당히 건방지게 세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헤쳐 나가기 바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잘 견뎌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다가오죠. 어찌됐든 인간하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 (웃음) <참여자 4>

“아이를 통해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능력을 인정받을까를 주로 생각하고... 집안에 대한 관심은 그 뒤였죠. 그런데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몫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아마 되게 잘난 척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한만큼 결과를 얻어 왔기 때문에 생각할 때 그런 기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니 아주 대단한 성장이네요.” (웃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욕심을 끝없이 부렸겠죠.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참여자 6>

아버지들의 아픈 경험은 공감의 폭을 넓혀준다.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공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았고, 나에게 소중한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것들이 간절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엔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다,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냥 불쌍함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해졌죠. 그래서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그래요.” <참여자 1>

“양로원에 무료봉사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살아가는 세상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아이를 제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참여자 6>

(3) 이대로도 좋아

뒤를 돌아다보니 걸어온 길들이 아스라이 느껴진다. 어떻게 지나왔나.... 앞으로의 길은 얼마나 남았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지만 쉬어 갈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굵이굵이 걷고, 뛰고, 뒹굴면서 오다 보니 오늘이 되었다. 힘들기만 한 날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리고 보니 웃을 일도 많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머물면서 걸어가고려고 한다.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서 가능하다.

“얼마 전에 고민고민하다가 헬스를 등록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써본 금액 중 가장 거액이죠. 아이들 치료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투자한 거라서 뭐랄까.... 아무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보상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웃음) <참여자 1>

“아직 아이가 가야할 학교도 정하질 못했고,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도 많고, 회사일도 걱정이고... 그래도 그 동안의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편안한 거죠. 그래서 별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봐요.” “어이쿠 이 정도만 돼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저도 아직은 열심히 땀 만하고... 이런 날들만 계속돼도 감사한 일이죠.” <참여자 2>

“생각해보면 항상 힘들었어요. 지금이 제일 편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되돌아보거나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도, 안 되는 거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커 가는 게 보이고 아이도 저도 서로 적응이 되어서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겠다 싶어요.” <참여자 4>

“최근에는 가족들이 예전보다 웃을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의 사소한 변화에도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행복은 그 동안의 힘든 것들을 잊게 해주죠. 그 때 활짝 웃는 아이 얼굴이 아주 해맑거든요.” <참여자 5>

3.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의 본질과 일반적 구조

학문적 용어로 변경된 의미단위를 현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진술로 작성한 후 의미구조를 통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구조는 본질을 의미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의미구조는 추상화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Giorgi,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기초로,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과 관련된 개별적 경험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본질주제와 17개의 공통적인 상황적 구조를 설명하였다.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경험의 구성요소들 간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5개의 본질 구조에는, 자녀의 전환기에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험으로 구성된 ‘다시 넘어야 하는 산’,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구성된 ‘아이가 주는 희망’ ‘가장(家長)의 자리’ ‘주변의 도움’, 적응의 결과로 경험하는 ‘지금의 행복’이었다. 각 본질에서 탐색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시 넘어야 하는 산**의 본질에서 장애아동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적응해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5개의 구성요소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장애자녀의 전환기로 인해 새로운 장(場)으로 접어든 아버지는 새로운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아직 심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는** 학교문제로 좌절과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고 단단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현실과 타협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회피하던 장애진단을 받기도 하고, 교육현장에 뛰어들어 열심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 그러는 중에도 **몸만 자라는 아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더 큰 부담과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 신체적 성장은 사람들의 편견의 폭을 넓혀가게 한다. 자녀가 자랄수록 행동이 느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날카로운 지적과 시선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모임이나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게 된다. 아버지는 이러한 경험이 더해질수록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진다. 현재 헤쳐 가야할 어려움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을 함께 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령기에 마주하는 어려움은 아버지로서 다시 적응을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된다.

둘째, 아버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아이가 주는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은 아버지의 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본질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아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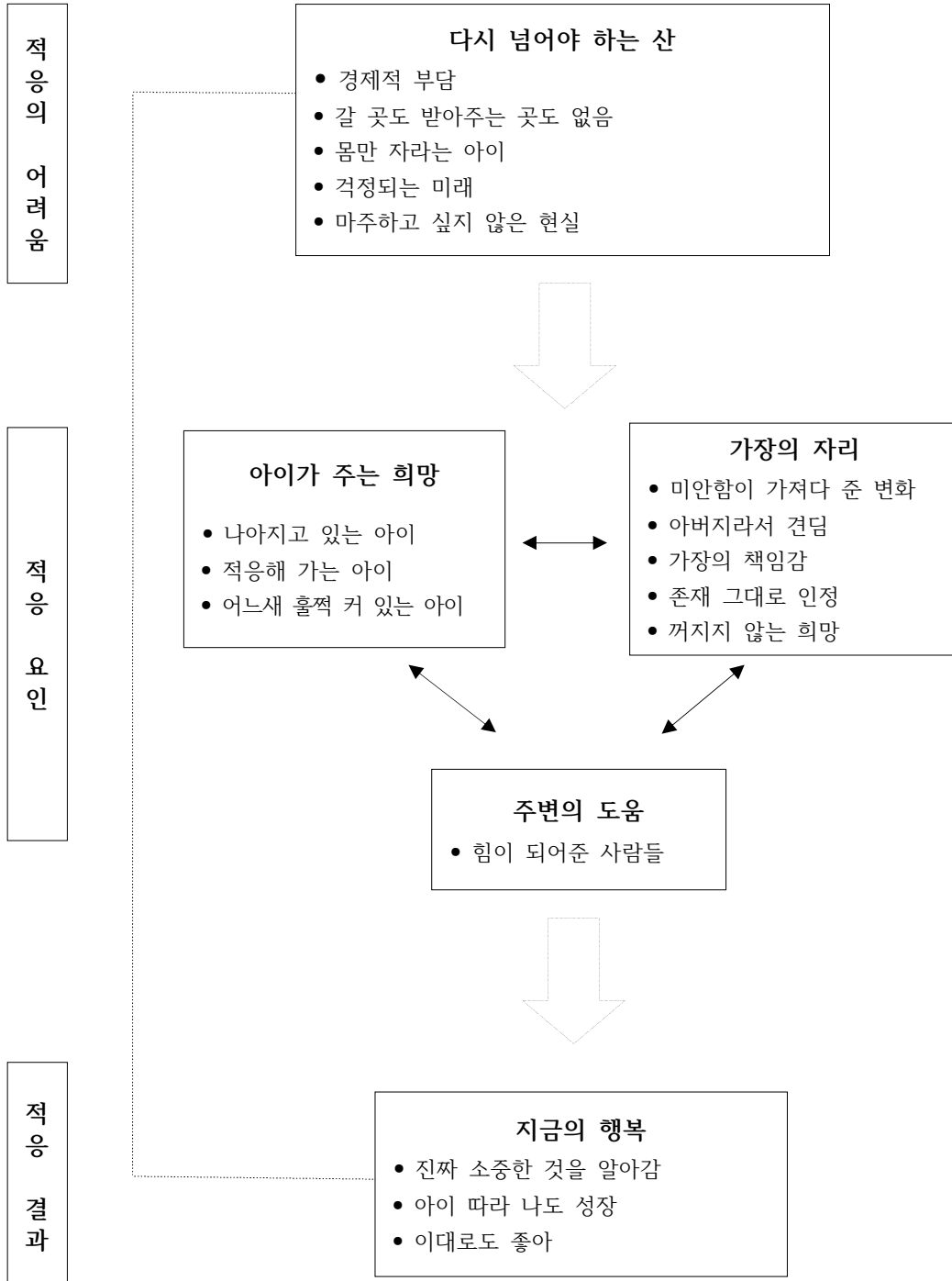
는 아이를 보면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더디지만 자녀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는,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과 치료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얻고, 어떤 것도 해 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설피고 불편한대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여러 장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적응해 간다. 아이의 양육현장에 깊이 개입될수록, 아이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다가오고, 그렇게 변화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된다. 비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에게 비해서 양육에 참여하는 영역이 넓은 아버지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양육을 동시에 하느라 늘 바쁘게 지낸다. 매일 같이 동동거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어느새 훌쩍 커있는 아이**를 새삼스레 발견한다. 불편한 곳이 신체의 한 부분이건, 마음이건, 정신이건 간에 쑥쑥 자라는 아이는 대견함을 맛보게 해준다. 모든 것이 남들과 다른 속도인데, 같은 속도로 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는 것이다.

셋째, **가장의 자리**에 대한 본질이다. 여기에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자신의 노력이 있다. 장애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지 않은 날이 없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견디는 방법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아버지라서 견디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자녀가 안쓰럽고 아내와 비장애 자녀에게는 미안하다. 그래서 혼자서 견디는 것이 익숙한 아버지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버거운 삶도 살아내게 만든다. 그러나 때론 너무 버거워 그 힘들음을 외면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전가시키기도 하고, 답답함에 아이에게 화를 내며 다그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행동들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아버지는 조금씩 **변화**를 해간다. 아내의 힘든 자리를 도와주고 **아이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다보니, 답답하던 아이의 더듬을 느긋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현실은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과 행복도 함께 있음을 발견해가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자 노력한다.

넷째, 주변의 도움의 본질이다.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가장 공통적인 대상은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노력과 묵묵히 견디어준 고마움은 **가장**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자녀를 이해하고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준 전문가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게 해준 교사, 친구, 지인들의 도움이 있어, 아버지로서 역할에 적응 해가며 지금에 이를 수 있다. 혼자 견딘다고 생각했으나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본질은, **지금의 행복**이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힘들어 일상이 되어버린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행복해 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 내었다. 살아오던 습관대로 나를 챙기고,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회적 성공을 향하던 시선이,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알아가게 했다**. 깨달음은 삶이 변화되게 해주었고 성장하게 해주었다. **아이만 성장한 게 아니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그 힘든 날을 통해서, 이웃을 마주보게 되었고, 사소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고, 평범함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것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굳이 행복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가 좋아**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세상 아이들보다 더디 가고 있는 내 아이 때문이다.

일반적 구조진술은 경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각 의미에 관해 직관적 파악과 반영을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포괄하는 전체의 경험을 일반적인 구조진술로 통합한다. 이상의 결과를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 경험의 시간적 흐름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도식화한 일반적 구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일반적 구조

Ⅶ.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학령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경험한 심리적응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연구를 위해 설정된 질문은 ‘학령기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로, 학령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Giorgi 현상학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구성요소, 17개의 하위구성요소 및 354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본질적 의미를 구성하는 5개의 구성요소는,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험으로 구성된 <다시 넘어야 하는 산>,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구성된 <아이가 주는 희망>, <가장의 자리>, <주변의 도움>, 적응 결과로 경험하는 <지금의 행복>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구성요소를 크게 적응의 어려움과 적응요인, 적응결과로 나누어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 경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시 넘어야 하는 산>이었다.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진단초기의 부정과 분노의 격렬한 감정이 수그러들고 나뉠대로의 적응과정을 거쳐 간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의 수용, 미래에 대한 걱정은 미해결과제로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 큰 자리로 남아있다. 또한 학령기라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겪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경험은 아버지의 어려움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장애아동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나영과 이승희(2001)는 자녀의 장애와 양육비용을, 김정연과 윤형준(2013)은 경제적 책임을, 안인실(2008)은 교육적 스트레스를, Heaman(1995)은 자녀의 미래를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라고 각각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위구성요소에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자녀의 장애진단 초기부터 장애아동 아버지들에게 지속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감이 있다(Meyers, Lukemeyer & Smeeding, 2000). 자녀의 장애를 일부분 수용하기는 하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치료와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애자녀로 인해 맞벌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책임을 자신들만의 역할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장애자녀의 치료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빈약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부모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이 어려운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해져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아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절대적 믿음으로 치료에 매달리며 경제력과 시간을 쏟아 붓는다(송정숙, 2012)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장애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부모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과 걱정은 학교문제인데,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고, 2명은 입학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유아기 장애아동의 아버지들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선택의 기로에서 높은 불안감을 경험한다는 황어진(2014)과, 입학 전인 장애아동의 학부모 96.8%가 자녀의 학교선정과 취학유예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진숙 외(2011)의 연구가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아주 어렵게 입학을 한 부모들도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녀의 장애를 배려한 적절한 서비스와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장애 자녀의 수업 부적응 문제, 보조교사의 문제, 교우관계 문제 등 장애로 인한 학교문제는 부모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이진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는, 장애아동의 교육문제는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자녀의 사회적 행동에 어머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사회적, 교육적 상태에 큰 관심을 갖는다(Lamb & Meyer, 1991). 가족의 사회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의 특징이나 자녀의 집 밖에서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Prince-Bonham Addison, 1978). 이러한 특성은 장애아동 아버지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인관계를 위축되게 만들고, 모임이나 여행 또는 대중이 모이는 곳에 장애자녀와 동반하는 기회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도 한다.

두 번째, 장애아동 아버지들이 심리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진술한 본질은, 장애 자녀의 요인인 〈아이가 주는 희망〉, 연구 참여자인 아버지의 요인인 〈가장(家長)의 자리〉, 사회관계적 요인인 〈주변의 도움〉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장애 자녀의 변화와 주변의 도움은 아버지를 변화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변화는 자녀와 가족의 변화를 다시 초래하면서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해 간다.

장애 자녀의 아버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의 장애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조금 느린 개념으로 수용하고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수용의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 자녀의 긍정적 변화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변화가 없었다면 견디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속적인 힘듦 속에서도, 아버지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것은 자녀의 변화였다. 그 변화로 인해, 아버지는 기쁨도 느끼고, 경제적 부담도 이겨내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 받는 것이다. 윤건수(2013)는 인간의 동기를 ‘... 때문에 동기 because motive’와 ‘... 을 위하여 동기 in order to motive’로 구분(Schutz, 1967)한 것을 인용하며, 앞의 것은 회고적 동기로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둔 동기이며 뒤의 것은 지향적 동기 즉, 미래의 소망에 바탕을 둔 동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둘 중 어느 한 동기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애아동 아버지 변화의 동기는, 배우자와 장애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의 회고적 동기와, 자녀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의 지향적 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어느 한 동기에 국한되어 행동하기보다는 과거 경험과 미래의 소망 모두에 바탕을 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장애는 아버지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아버지들은 행동함에 있어 지향적 동기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자녀에 대한 수용의 정서는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아버지들이 만나는 전문가들은 아버지들이 장애 자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원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정보공유 및 획득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한남주, 2007). 이렇게 받아들여진 현실은 장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녀의 한계와 아버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하는 아픔도 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숙명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한다. 이는 부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아버지로서 가지는 정신적, 육체적 성질로 아버지라는 역할이 부여된 남성에게 주어지는 마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현정, 2014). 이는,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보편적 문화에 따라 대부분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부성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한 조현근(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동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아버지 역시 만성적 불안과 같은 심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배우자 및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한다. 아버지들은 어차피 다른 선택이 없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기쁨을 말하고, 행복을 언급하는 아버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여전히 힘들다고 말한다. 아이의 장애로 인해 힘들었던 것만큼 책임감이 커졌지만, 그 책임감이 버겁고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힘들게 견디어 내는 만큼 얻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삶에 주관적인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규옥 외, 2010)로 뒷받침되어진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와 발달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 발달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줄어든다고 한 황어진(2014)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이는 측정방법에서 부정적인 접근과 긍정적인 접근의 차이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관점에서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접근하였기 때문에 장애 자녀는 아버지에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희망이라는 연구의 구성요소가 도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아버지들이 적응의 결과로 언급한 구성요소는 <지금의 행복>이다. 아버지들은 장애 자녀로 인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과 경험들은 아버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장애아동의 아버지들의 이러한 변화를 언급한 이규옥 등(2010)이 장애 자녀의 양육경험을 통해 실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것처럼, 연구결과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기부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실천적 변화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버지들의 아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단순히 공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변화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대인관계의 대처방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버지 스스로 성장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자녀만 성장하고 극복해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도 함께 성장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폐아동의 어머니를 연구한 정순정

(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적응과정에서도 자각된 성장은 도출되었다. 이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자녀의 장애 수용을 통해 자녀와 더불어 성장함을 느끼고, 삶의 태도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송정숙(2012)의 연구에서,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장애 자녀의 발현과 가족의 내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강점관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너무 힘들어 뒤돌아보는 것도 싫다’는 진술과 함께, 그 힘들었던 날들이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주었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행복해 질 수 있는 것들이, 내 주위에 평범함으로 산재해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도적이건, 자연스러운 적응의 과정이건 결과이건 이는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아동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더욱 많이 수행되어야 하며, 장애아동 아버지가 지닌 긍정적 경험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령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심리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적응의 어려움과 적응의 요인, 적응결과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5개의 본질구성을 살펴보았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체험은 단계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동시에 경험되거나 상호순환적인 관계로 드러났다. 아버지들은 적응을 이야기 하면서도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고,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 하면서도 아픔을 이야기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아동 아버지들의 심리적 적응은 단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감정과 태도이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거부와 수용, 적응과 퇴행을 동시에 갖는다(Berry 등, 1983; Burden, 1991)고 하였다. 이는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 경험은 부적응과 적응이 공존하는 어려움과 희망의 혼재라고 볼 수 있으며,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버지에게 장애 자녀의 양육은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며, 이 어려움의 아픔과 상처는 변화와 성장이 되어 주었고, 이 성장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의 경험을 어려움과 적응으로 분리하여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2. 한계 및 제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참여자 선정과정에 따른 표집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은 주요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진 중상류층으로 사설치료센터를 꾸준히 이용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들로 선정되었다.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와 교육의 선택이 한정된 아버지는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생생한 양육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로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생활시설에 있는 자녀의 아버지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면서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자녀의 아버지까지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리적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전 생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장애아동 아버지가 경험한 심리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본 연구는 학령기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이라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와 같은 장애아동 아버지의 심리적응의 탐색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원인에 대한 탐색과 적응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개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어려움에 대한 원인과 대처전략,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의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같은 개입 연구는, 버거우면서도 책임감과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내고 있는 장애아동 아버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인 아버지들의 심리적응은 체계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 삶에서 터득되어진 생존과 책임의 형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면담이 끝난 후, 장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깊게 생각을 해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고, 자녀의 출생과 진단부터의 경험을 되짚어 보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경험의 질문을 받으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애아동 아버지들은 가장으

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아버지들에게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긍정의 힘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들의 적응수준을 높을 수 있는 중요한 내적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 아버지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윤영(2006). 발달지체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윤호열(2000).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결합력. **대한가정학회지**. 38(7), 89-99.
- 김나영, 이승희(2001).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가족결합력, **발달장애학회지**. 5(2), 31-42
- 김상용(2007).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특수교육연구**. 7, 53-71
- 김이경(2012). 우리나라 장애아동부모 연구 동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 윤형준(2013).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 12, 333-356
- 김천국, 김진희(2012). 장애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 **특수 아동교육연구**. 14, 279- 296.
- 김현주(2014). 강점중심의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아버지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준, 곽승철(2013). 자폐성 장애아동 아버지의 존재론적 이해 : 특수교육과 후기구조주의 방법론.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4(4), 163-187.
- 박현정(2014).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 아버지의 부성경험. **한국 사회복지실천 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87-120
- 송정숙(2012). 발달장애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립(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안인실(2008).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요구 분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애(2010). ADHD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정과 양육경험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견수(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 **한국정책과학**. 제17권 제2호, 163-200
- 이규옥, 한성희, 박혜준(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Vol. 26, No. 4, pp. 137-163.
- 이성용(2014).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실험연구 분석. **특수영재교육저널** 6, Vol. 1, No. 1, 73-95



- 이진숙, 이현래, 이옥등(2011).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장애아동 학부모의 인식조사. **특수아동 교육연구**, 13(1), 79-101
- 임경옥(2011). 발달지체영유아 아버지의 가족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단국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미린(2014). 작업치료에서의 장애아동 부모상담 실태와 상담욕구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식(2010). 장애아 아버지의 심리와 상담요구 분석.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들, 김고은(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장애에 대한 태도, 가족신념, 양육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85-104.
- 정순정(2004). 자폐아 어머니의 장애 적응과정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근(2015).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생애 이해 : 숲제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5(2), 27-64.
- 최희정, 이인수(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17(2), 175-194.
- 한남주(2007). 발달지체 영유아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 탐색.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순(2005). 통합교육 장애유아 아버지와 비통합교육 장애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정애(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어진(2014). 유아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갈등 및 어려움 그리고 긍정적 변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ry, J. O. & Zimmerman, W. W. (1983). The stage model revised. *Rehabilitation Literature*, 44, 275-277.
- Boyd, M. (1989). *Migrant women in Canada: Profiles and policies. Report prepared for monitoring panel on migrant wome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irectorate for social affairs, manpower and education*. Employment and Immigration Canada: Public Affairs Inquiries and Distribution, Ottawa.
- Burden, R. L. (1991). Psycho-social transitions in the liv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handicapping condition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4, 331-343
- Crnic, K. A., Freidrich, W. N. & Greenberg, M. T.(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3, 128-138

- Deborah, K. P.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사.
- Gavin, L. & Wysocki, T. (2006). Associa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in disease management with maternal and family outcomes in families with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1(5), 481-489.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 Giorgi, B. (2003). Phenomenology. In J. Smith (ed.),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s* (pp.25-50). London: Sage.
- Gumz, E. J., & Gubrium, J. F.(1972). Comparative parental perceptions of a mentally retarded child.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77(2), 175-180.
- Heaman, D. J. (1995). Perceiv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mothers with father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5), 311-320.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 of the fathers*, The Father rol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Lamb, M. E. & Meyer, D. J. (1991). *Father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family with a handicapped child*.(pp 151-180). Boston: Allyn and Bacon.
- Meyer, D. J., Vadasy, P. F., Fewell, R. R., & Schell, G. (1982). Involving fathers of handicapped infants: Translating research into program goal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5(1), 64-72.
- Meyers, M. K., Lukemeyer, A. & Smeeding, T. (2000). The Cost of Caring: Childhood Disability and Poor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72(2), 209-233.
- Morse, J. M., & Field, P. A. (1994). *Aggregating qualitative findings: An Approach to theory development*.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 Olshanky, S. (1962). Chronic sorrow : A response to having a mentally defective child. *Social Casework*. 43. 190-192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s.
- Prince-Bonham, S. & Addison, S. (1978). Families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Sparling, J., Biller, M. & Berger, R. (1992). Fathers: Myth, reality and Public Law 99-457. *Infants and Young Children*, 4, 9-19.
- Roy, C. (1976). Introduction to Nursing: Ana daptation model. NJ: Prentice-Hall.
- Schutz, Alfred.(1967). *The Phenome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inger, L. & Farkas, K. J. (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38, 444-449.

Tucker, S. J. (1980). The psychology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taff interaction. *Rehabilitation Literature*, 41, 114-1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a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Lee, Eun-Seon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essentiality of psychological adaptation experienced by fathers who bring up their handicapped children. In response to this, I have ha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fathers who take care of school-aged children with handicaps. Results of data analysis produced 5 components and 17 sub-components from 3 domains.

First, 'Difficulties that begin again' consists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fathers with their handicapped children. The essential meaning includes its sub-components: 'Financial burden', 'Nowhere to go and to be welcomed', 'A child who gets bigger', 'Concerned future', and 'A reality that I do not want to face'.

Second, 'Hope given by the child' is a positive factor of the child which helps with their fathers'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A child who is getting better', 'A child who adapts', and 'noticeably grown child' are sub-components of 'Hope given by the child.'

Third, 'The position as a father' is a component of father's own factor, and it consists of sub-components: 'Changes caused by an apology', 'Enduring because it is a father', 'Father's responsibility', 'Accepting it as it is', and 'Hope that dose not disappear'.

Forth, 'Help from others', which is helpful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is a factor of social relationship, which includes 'Supportive people' as a sub-component.

Lastly, the result the essential meaning of ghe 'Current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athers with disabled children produced sub-components, such as 'Realizing something really important', 'Mental maturity along with the child', and 'Satisfaction as it is'.

■ key words : Father of handicapped children, Psychological adaptation, Phenomenology

논문투고일 : 2017. 4. 30.

논문심사일 : 2017. 6. 19.

개재확정일 : 2017. 6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8, No. 1, 73-95.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 두려움에 관한 고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오 봉 욱*
강원대학교 전 동 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국 장애 추정인구 약 273만 명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장애인의 안전 욕구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혐오범죄, 범죄 두려움 영향 요인 등에 관한 문헌 고찰과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대상의 인권침해, 혐오범죄를 포함한 범죄피해가 가족구성원과 지역 주민, 복지시설 관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둘째,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셋째,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범죄 두려움에는 성별, 취약성 인식, 직접 범죄피해경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집합효율성, 경찰신뢰와 경찰활동 요인이 있고, 이타적 범죄 두려움에는 연령, 취약성 인식, 직접 및 간접 범죄피해경험,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비공식통제참여 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는 연령, 학력, 취약성 인식,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지역사회 경찰활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장애인의 범죄피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 실태조사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과 범죄 두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근거로 맞춤형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 욕구에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 혐오범죄 등과 같은 범죄 피해 현황과 범죄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장애인, 안전 욕구, 인권 침해, 혐오 범죄, 범죄 두려움

* 주저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7월 26일 새벽, 일본(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의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인을 대상으로 칼부림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 범죄’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장애인 시설의 직원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와 시설로 구분되어 생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범죄피해는 뉴스보도와 인권단체의 조사, 형사사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재불명 장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2016년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집중상담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고, 인권보호와 피해 시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인천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쿠키뉴스, 2017년 4월 10일).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서 안전 관련 담당부서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이상열, 2016). 범죄피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인 범죄피해 두려움(Fear of Crime)은 장애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오봉옥, 2016a).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였다. 1단계인 ‘생리적 욕구’, 2단계인 ‘안전의 욕구’, 3단계인 ‘소속, 애정의 욕구’ 순으로 2단계가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3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장애인의 교육·취업차별, 임금착취 및 강제노역, 염전 노예사건, 장애인 시설에서

의 폭행과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피해(오봉욱, 2013; 오봉욱, 2016a)는 장애인에게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축시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립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보안장치 구입과 사설경비 등 안전을 위한 추가 비용 지불과 지역사회 내 이웃과 지역주민 등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대인관계 등의 사회 내 상호작용이 위축된다. 결국은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약화된다고(민수홍, 2011; 오봉욱, 2016a).

영국의 민간단체인 장애혐오범죄대응네트워크(Disability Hate Crime Network)는 1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혐오범죄 사례’를 조사한 결과, 87.2%가 혐오범죄 혹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범죄가해자로부터 ‘남을 등쳐먹는 사람(scroungers)’ 혹은 ‘수당 좀 그만 받아 먹어라(get off benefits)’, ‘가짜 수급자’ 등의 언어폭력을 동반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제시되었다(bemimor news, 2015년 7월 23일).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에 의해서 비 장애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제37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라는 성명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 또는 위협한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발표하였다(뉴스핌, 2017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 혐오·비하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과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계를 포함한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올해 5월 30일부터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만 9,000여명이 한꺼번에 퇴원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정신보건법 개정)’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여성신문, 2017년 4월 20일).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논문, 언론보도에 제시된 장애인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피해 현황,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론과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피해

사례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장애인 범죄피해 현황을 통해 장애인 범죄피해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둘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다.
- 셋째,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다.
- 넷째,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II.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범죄 두려움에 관한 이해

1.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언론보도 자료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범죄피해 현황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2017)를 검색하면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과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 검색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요 범죄자 유형별 동향을 보면 소년·공무원·여성·외국인·정신장애 범죄자로 구분하여 현황, 주요 죄명별 발생 추이, 전과 현황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중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자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오봉욱, 2014).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현재까지 진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보고서,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경찰청의 2014년 범죄통계 등의 자료와 장애인의 생활 실태에 관한 대표적인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장애인 범죄피해 유형,

현황, 가해자의 특성과 관계, 가해원인, 대처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인권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435건 중 학대로 규정된 상담이 3,150건(37.4%)으로 전체 상담 및 학대 상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학대사례의 경우 2008년 100건에서 2013년 1,168건으로 11.7배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 1577-5364 상담센터의 전체 상담 6,116건 중 학대관련 상담이 2,171건(41.4%)이었다(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5). 이중 경제적 학대(38.4%)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3.1%), 정서적 학대(14.3%), 유기방임(7.5%), 성적 학대(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인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인(57.3%), 지체장애(9.5%), 뇌병변장애(7.9%), 정신장애(4.9%) 순으로 나타났다(경인방송, 201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Center for Abuse Victims with Disabilities)’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설치·운영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 법률·의료·심리·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년 4월 29일 검색).

2) 장애인 범죄피해 언론보도 자료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 염전 노예, 섬 노예 등으로 (성)폭력과 임금·노동착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던 장애인은 범죄피해자로서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오봉욱, 2013).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매체를 통해 보도된 장애인 대상의 범죄피해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26일 SBS 긴급출동 SOS 24 ‘섬에 갇힌 사람들’방송의 지적장애인은 인신매매로 섬에 들어가게 되어 마을 이장에 의해 임금과 장애수당 착취, 노동착취 등 ‘노예 청년’으로 보도되었다. 2006년 7월 4일 ‘노예 며느리-지독한 시집살이’ 방송의 지체장애인, 2009년 5월 임금 및 노동착취 피해자 ‘차고에 사는 노예’의 지적장애인, 2011년 1월 28일 고물상에서의 임금 및 노동착취 피해자 ‘머슴살이 15년’, 2013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원도 홍천 연못의 집에서 거주인에 대한 감금과 유기 사건’, 2014년 3월 3일 SBS 뉴스에 방영된 ‘염전 노예’ 지적 및 청각 장애인의 임금과 노동착취 피해 등 ‘현대판 노예’등의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서의 인권침해(오봉욱, 2013)와 2015년 5월 18일 새벽 4시경 지체장애인(3급)이 30대 취객에게 ‘묻지마 폭행’에 의해 실명된 사건, 2016년 10월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 시립 희망원 강제노동, 금품갈취, 상습폭행 등 사건’ 등 범죄피해자의 중심에 있었던 장애인에 관한 사건사고는 가족구성원, 지역 주민, 복지시설 관계자 등에 의한 피해사건으로 밝혀진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인 장애인은 보복범죄의 두려움과 노출의 위험성이 크지만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이다(세계일보, 2014년 8월 20일).

또한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 등의 명목으로 탄원서를 제출 혹은 고소 취하를 종용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낮은 피해자의 장애를 약점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5년 9월 14일; 이상열, 2016).

2. 혐오범죄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대처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신체적 장애, 연령, 계층 등이 다른 특정 집단에 대한 평소에 가진 증오심과 선입견(bias), 편견을 갖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말한다(김지영, 이재일,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b)은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 이재일, 2011)를 통해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실태 조사와 선진각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국내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 설정을 목적으로 연구한바 있다. 그 외 대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2016년 7월 26일 일본 장애인시설 살인사건에 의해 19명의 장애인이 사망하고 26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가해자는 ‘장애인은 차라리 죽는 편이 가족에게도 편하며, 전국 장애인 시설을 돌며 장애인을 죽이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웹툰뉴스, 2016년 7월 27일).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혐오 및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장애인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 즉,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기대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임종호 외, 2016). 예를 들어 ‘사회의 위협’, ‘가치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 ‘신의 저주’등이 있다. 둘째,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살펴봐야 한다. 우생학이론

에 의하면 우생학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우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인류의 유전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 우생학 이론에 의하면 사회방어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수용하고 강제로 단종(斷種)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상품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하여 부와 지위를 높인다. 그러나 장애인은 갖고 있는 생산력이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이익섭, 1993; 임종호 외, 2016). 편견이론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면서 편견을 가져온다. 이때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이나 학살로 설명된다(Allport, 1958). 편견은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임종호 외, 2016).

혐오 및 증오범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증가한다. 즉, 경제적 곤궁기 때 소수집단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인식되어 누군가의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the L, 2016년 5월 30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발언, 혐오범죄는 사회가 묵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혐오발언과 혐오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 차별금지가 명문화돼 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증오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1990년 4월 23일 “증오범죄통계법”에 의해 증오범죄 자료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면서 인종·종교·성적 취향·민족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증오범죄에서 그 후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범죄(폭력범죄 규제 및 범집행에 관한 법(1994년), 청소년 대상 범죄 또는 청소년 실행 범죄 및 특정 성적체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매튜 세퍼드 & 제임스 버드 증오 범죄 예방법(2009년) 또한 증오범죄의 의무적 수집대상으로 확대되었다(김지영, 이재일, 2011).

국내에서도 혐오 및 증오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사회 전반의 ‘혐오’ 분위기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뉴스1, 2016년 5월 21일).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별, 혐오범죄피해 유형별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처와 인식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피해 두려움과 설명이론에 대한 이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중심의 연구에서 1960년대 이후 직·간접적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범죄피해 두려움의 개념과 유형,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설명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봉욱, 2016b에서 재인용).

1) 범죄(피해) 두려움의 개념

범죄(피해) 두려움은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의미한다(김연수, 2010). 또한, 범죄피해 두려움은 범죄 두려움(Fear of Crime)과 유사한 언어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 두려움을 사용하고자 한다.

2) 범죄 두려움의 유형

범죄 두려움의 유형은 일반적 범죄 두려움, 이타적 범죄 두려움, 구체적 범죄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범죄 두려움에 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봉욱, 2016b에서 재인용).

첫째, 일반적 범죄 두려움은 평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범죄로부터 느끼는 취약성의 일반화된 느낌 또는 안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무형의 두려움이다(조상현, 김양현, 2014). 둘째, 이타적 범죄 두려움은 내가 아닌 타인이 당할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타적 범죄 두려움은 배우자피해 두려움과 자녀피해 두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 범죄 두려움은 범죄 유형별로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는지를 측정한다. 재산피해(절도, 사기, 손괴, 무단침입 등), 폭력피해(강도, 폭행·상해), 성폭력피해(성추행과 성폭행)의 범죄 두려움으로 구분된다(LaGrange & Ferraro, 1987; 장안식, 정혜원, 박철현, 2011; 오봉욱, 2016b).

3) 범죄 두려움의 설명이론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취약성 이론, 무질서 이론, 사회통합 이론, 지

역사회경찰활동 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다(오봉욱, 2016b에서 재인용).

첫째, 취약성 이론이 있다. 범죄 두려움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범죄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즉, 범죄 취약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 범죄 취약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더 많은 범죄 두려움을 느낀다. 취약성 개념은 Skogan & Maxfield(1981)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Killias(1990)에 의해 위험인지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결과의 심각성, 통제의 결여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Killias & Clerici, 2000). 취약성 이론은 피해가설로 불리기도 한다. 취약성은 크게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취약성(physical vulnerability)은 범죄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범죄피해의 손상을 회복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본다(이운호, 2007).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은 학력(교육) 수준과 소득수준 등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Franklin & Franklin, 2008),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수인종,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Will & McGrath, 1995).

둘째, 무질서 이론이 있다. 헌터(Hunter, 1978)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상태는 지역사회의 통제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며, 지역 내 범죄피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상징’(symbols)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노성훈, 조준택, 2014). 범죄 두려움에 관한 초기 연구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무질서 이론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중 거주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지역의 무질서가 범죄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Lewis & Salem, 1986). 즉,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성을 살펴보면서 범죄 두려움의 분석 범위가 확대 되었다. 지역의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physical disorders)와 사회적 무질서(social disorders)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 제시된 동네에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창문 벽면의 낙서와 무질서한 그림, 거리의 쓰레기와 폐차 등의 상황을 말하고, 사회적 무질서는 거리를 배회하는 불량배와 만취한 사람들의 모습, 노숙인 등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통합 이론이 있다. 범죄 두려움은 지역사회의 해체와 지역 구성원들의 통합과 결속력의 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지역통합과 유대가 낮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이 사회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각으로 범죄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Taylor & Hale,

1986). 이와 관련하여 ‘지역 염려가설’로도 불린다. 지역유대와 결속력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범죄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집합효율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Sampson et al., 1997; 박정선, 이성식, 2010). 집합효율성은 지역구성원들의 신뢰와 비공식적 통제력, 즉 교제와 참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하고 또 범죄예방에 참여할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 Raud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이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와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Kelling & Coles, 1996; Skogan & Harnett, 1997; 박정선, 이성식, 2010). Zhao와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 지역사회 경찰에 대한 가시적인 정도에 따라 범죄두려움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이성식, 2000; 박정선, 이성식, 2010; 이재영, 유영재, 2014).

4)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 두려움은 취약성 이론, 무질서 이론, 사회통합 이론,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 등으로 설명되면서 범죄학·경찰학·피해자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중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범죄 취약성이 결정된다는 취약성 이론에 근거하여 대부분 여성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오봉욱, 2016b).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 등과 관련된 논문은 상당수 있으나, 장애인 안전 그 가운데 장애인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열, 2016). 실제로 취약성 이론에 근거하여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몇 편에 불과하다(오봉욱, 2016a; 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 오봉욱, 최중복, 2017). 이것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패널 자료로 2차 자료분석을 진행한 연구(오봉욱, 2016a; 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 오봉욱, 최종복, 2017)와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이상열, 2016)가 대표적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은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이타적 범죄피해 두려움은 연령과 사회적 무질서, 비공식통제참여가 높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오봉욱, 2016a). 또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 취약성 이론에 근거할 때 예상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 김성언(2013)의 연구를 토대로 노인의 잠재적인 ‘무감각화 과정’과 유사한 논리로 해석하였다. 즉, 오봉욱(2016a)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다가올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 ‘낮게 평가’(저평가)하거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매력성’ 부분에서 스스로 낮게 인식하여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범죄피해 예방에 대해 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 장애인, 노인을 범죄에 취약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김은경 외, 2014)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은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물리적 무질서가 낮을수록,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이타적 범죄피해 두려움은 노인(65세 이상)보다 비노인(65세 미만), 학력과 취약성 인식, 직접범죄피해경험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간접범죄피해경험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은 노인(65세 이상)보다 비노인(65세 미만), 학력과 취약성 인식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감소할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오봉욱, 2016b).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본 범죄피해 두려움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재산피해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폭력피해 범죄두려움, 성폭력피해 범죄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오봉욱, 2016b).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재산피해·폭력피해·성폭력피해 두려움에 공통적인 영향 요인은 취약성 인식, 사회적 무질서와 경찰활동으로 취약성 인식과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경찰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재산피해 범죄 두려움은 노인보다 비노인,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폭력피해 범죄두려움은 노인보다 비노인,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 성폭력피해 범죄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았다(오봉욱·양승돈, 2017). 또한, 오봉욱과 최종복(2017)은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에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범죄피해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체 장애인 122명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결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범죄피해 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나타냈고,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간접피해경험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직접피해경험은 정적인 관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의 인식은 범죄피해 두려움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이상열, 2016). 즉,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낮아졌다.

Ⅲ.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두려움 등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1.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 미흡

1)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구,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으로 현재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94년 - 2006년까지(3년마다 1회 실시) 총 5회 걸쳐 소규모로 진행된 설문조사였다. 그리고 2009년 개편 후 제1차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시행되면서 2년마다 실시되었고 3차 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4년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최수형 외, 2015), 2016년 제5차 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6)가 실시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국사회의 숨은 범죄 발생률과 범죄피해의 취약 요인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실시 중이다. 즉, 범죄피해율과 범죄피해

두려움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사회 안전 지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죄문제와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 2016; 오봉욱, 2016b에서 재인용).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만이 아닌 미신고된 범죄에 대해 추정이 가능하여 총범죄의 수를 추정할 수 있고, 왜 범죄가 경찰에게 신고 되지 않는지와 범죄 사건의 유형과 성격이 경찰의 사건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범죄피해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그러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장보고 혹은 범죄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당혹스럽거나 문제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거나 단순히 사건을 잊어버려서 과소 보고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이민식 외, 2012).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a)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김지선, 홍영오, 2011)에서 처음으로 ‘장애여부(①있음, ②없음)’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서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장애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 그 결과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2.4%(459명/16,098명)이며, 남자(3.0%)가 여자(1.8%)보다 많았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를 검색해보면, 가족 관련사항에서 ‘장애유무’,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장애여부(①있음, ②없음)’외에는 검색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등에 의해 구분하여 제시하여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내용은 살펴볼 수 없었다. 그 결과,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원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해 분석된 선행연구가 오봉욱(2016a)의 연구 외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3)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은 통계청과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김은경 외, 2014)를 실시하였다. 이때, ‘장애여부(①있음, ②없음)’ 문항이 ‘장애인복지카드(①있다, ②없다)’로 수정되어 조사대상

자에게 장애유무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 생각된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 있는 협의의 장애인)는 2.1%(333명/12,984명)이며, 남자(2.4%)가 여자(1.8%)보다 ‘장애가 있다’의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찾고자 ‘장애인’을 검색해보면, 2010년 기준과 2012년 기준 기초조사표 조사항목 변동내역에서 ‘장애여부는 장애인으로 변경함’, 가구 구성의 세부 항목 중 ‘장애인만 응답’에서 ‘장애인복지카드(①있다, ②없다)’,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만 검색되었다. 결국, 장애인복지카드의 소지여부를 질문한 뒤 이와 관련된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었다. 즉,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원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대해 분석된 연구는 몇 편의 선행연구(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소수이며, ‘장애여부’만 조사되고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문항이 없다. 그 결과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범죄피해실태조사와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해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

(4)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최수형 외, 2015)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 실시된 이 조사의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장애인만 응답’하는 항목에 ‘장애인복지카드(①있다, ②없다)’로 질문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5%(269명/14,70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찾고자 ‘장애인’을 검색해보면, 가구 구성의 세부 항목 중 ‘장애인 여부’, 조사원의 질의 사례 중 강원사무소에서 ‘이웃에 사는 장애인이 집마당에 와서 상의를 탈의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음’,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장애인 복지카드 여부’만 검색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을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

수준, 직업 등에 의해 분석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쉽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복지카드의 소지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뒤 이와 관련된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보고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었다. 즉,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장애인실태조사 분석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다가 2007년 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되었다. 그 결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다(김성희 외, 2014). 2015년에 발표된 김성희 외(2014)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 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건강, 문화·예술활동, 재난관리,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변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전의 욕구’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단어를 검색해보면,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부터 안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재난안전관리’, ‘건강과 안전’, ‘사고의 경우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과 장애의 특성상 추락 등의 각종 사고 경험률에 의한 안전관리만 실태조사에서 다루고 있다. 즉, 장애인의 생활실태 중 ‘범죄피해에 의한 안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서술된 내용도 없다.

위와 같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 현황과 범죄피해 두려움을 연구하는데 조사대상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참여 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범죄 두려움에 대한 무관심

연구자는 사회현상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슈가 되는 영역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 등과 관련된 논문은 상당수 있으나 장애인 안전

그 가운데 장애인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이상열, 2016; 오봉욱, 2016a; 오봉욱, 2016b; 오봉욱, 양승돈, 2017; 오봉욱, 최종복, 2017)가 소수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관심주제에서 벗어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의 범죄피해,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 안전의 욕구 등에 대한 범죄학, 사회학, 피해자학, 사회복지학 등의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교육자, 연구자, 실천가로서 반성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중 의식주와 관련되어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2단계인 ‘안전의 욕구’는 사회복지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위 단계로 3단계 ‘소속, 애정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는지 반성하였다.

둘째, 장애인 복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장애인과 안전’에 대한 사회복지적 인식과 개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설 중심의 개입과 타인에 의한 보호로 의존화 시켜버린 접근방식, 자립과 사회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였다.

셋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범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거나 직접적·간접적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어!’라는 인식 혹은 ‘사회활동이 비장애인보다 많지 않아 인간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 폭력, 살인 등의 범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겠어?’라는 인식은 없었는가에 대해 반성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등쳐먹는 사람’ 혹은 ‘수당 좀 그만 받아 먹어라’, ‘가짜 수급자’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거나 내면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범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부족은 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현황과 혐오범죄, 범죄피해 두려움 등에 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전국 장애 추정인구 약 273만 명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대상의 혐오 및 증오범죄를 포함한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둘째,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그 결과 비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정책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셋째,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범죄 두려움에는 성별, 취약성 인식, 직접범죄피해경험,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집합효율성, 경찰신뢰와 경찰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타적 범죄 두려움에는 연령, 취약성 인식, 직접범죄피해경험, 간접범죄피해경험,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비공식 통제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는 연령, 학력, 취약성 인식,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업체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인권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 혐오범죄로 이어지므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 등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민간이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오봉욱, 2013). 또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향상, 재가 및 시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인권모니터링단, 인권상담가 양성 등을 실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권리·권익옹호 기관 등 인권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취약성 요인에 의한 성별, 취약성 인식, 무질서 요인에 의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사회통합 요인에 의한 지역유대, 비공식통제참여, 지역사회경찰활동 요인에 의한 경찰활동과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인에 맞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유형과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요령 등의 정보제공과 교육, 대처요령 실습 등의 접근과 지역사회 환경 중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개입과 지역유대감과 집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확대하는 등의 접근, 지역사회 경찰관계자와 함께하는 비공식적 통제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안전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오봉옥, 2016a; 오봉옥, 2016b; 이상열, 2016; 오봉옥, 양승돈, 2017; 오봉옥, 최종복, 2017).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범죄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통해 더 이상의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 중 패널자료에 의한 연구는 전체 대상자의 수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조사인원수가 매우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차후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설문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시할 때 폭력범죄피해(성폭력, 강도, 폭행 및 상해, 괴롭힘), 재산범죄피해(절도, 사기, 손괴, 단순주거침입 등) 등의 범죄피해 유형별 현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내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오봉옥, 2016a; 오봉옥, 2016b; 이상열, 2016; 오봉옥, 양승돈, 2017; 오봉옥, 최종복, 2017)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함과 동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인방송 (2016). 장애인 학대 현황과 피해, 대책 없나?. 2016년 7월 22일.
- 김성언 (2013).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쟁점과 경험적 탐색. **형사정책연구**, 24(1), 393-426.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정,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수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경, 황지태, 황의갑, 노성훈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심영희,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 이재일 (2011). **중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조준택 (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 뉴스1 (2016). 수위넘은 혐오발언·혐오범죄... 전문가들 “사회 문화부터 바꿔야”. 2016년 5월 21일자.
- 뉴스핍 (2017). 이성호 인권위원장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 주체... 인권·참정권 보장 더욱 필요. 2017년 4월 19일자.
- the L (2016). **혐오표현, 폭력행동 돌변할 수 있어... 대안 마련해야**. 2016년 5월 30일자.
- 민수홍. (2011). 범죄의 두려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경찰학논총**, 6(1), 155-176.
- 박정선, 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beminar news (2015). **장애인이 나랏돈 빼 먹는다는 생각, 혐오범죄 낳는다**. 2015년 7월 23일자.
- 세계일보 (2014). **범죄피해 신고 장애인·노인 ‘보복 무방비**. 2014년 8월 20일자.
- 양승돈, 오봉욱 (2016). 범죄피해에 대한 이타적 두려움: 배우자피해 두려움과 자녀피해 두려움의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9(3), 52-74.
- 웰페어뉴스 (2016). **일본 장애인시설 살인 사건... ‘괴물’만들어 낸 사회 뜯어 고쳐야**. 2016년 7월 27일자.
- 여성신문 (2017). **한국사회,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혐오의 대상으로 봐**. 2017년 4월 20일자.
- 오봉욱 (2013).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인권복지연구**, 14, 27-47.

- 오봉욱 (2014). 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33, 167-189.
- 오봉욱 (2016a). 장애인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2), 107-132.
- 오봉욱 (2016b). **취약집단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봉욱, 양승돈 (2017). 장애인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재산피해, 폭력피해, 성폭력피해 범죄두려움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10(1), 123-144.
- 오봉욱, 최종복 (2017). 지역사회 통합과 범죄피해 두려움: 사회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7, 47-69.
- 이민식, 김상원, 박미랑,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역 (2012). **범죄학 이론과 유형**(제10판). 미국: CengageLearning
- 이상열 (2016).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6, 141-169.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1(1), 117-139.
- 이익섭 (1993).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과 행동지침. **연세사회복지연구**, 1, 119-139.
- 이윤희 (2007).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이재영, 유영재 (2014).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69-202.
-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2016).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장안식, 정혜원, 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22(3), 291-326.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5). **2015년 활동보고회: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6). **일본 장애인시설 살인 사건은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혐오를 끝장내어야 한다!**, 웰페어 뉴스 보도자료, 성명, 논평면.
- 조상현, 김양현 (2014).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83-107.
- 최수형, 김지영, 황지태, 박희정 (2015).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쿠키뉴스 (2017). 한국장애인개발원, 범죄피해 발달장애인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 2017년 4월 10일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a).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b). **중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 cavd.kr. 2017년 4월 29일 검색일자.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 (2017). www.crimestats.or.kr. 2017년 4월 28일 검색일자.
- Allport, G. W. (1958). *Assessment of human motives*. New York: Rinehart.
- Franklin, T. W., Franklin, C. A., & Fearn, N.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 204-227.
- Hunter, A. (1978). *Symbols of Incivility :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exas, November.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2), 97-108.
- Killias, M. & Clerici, C. (2000). "Different measures of vulnerability in their relation to different dimensions of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437-450.
- LaGrange, R. & Ferraro, K. (1987). The elderly's fear of crim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search on Aging* 9, 3372-3391.
- Lewis, D. & Salem. G. (1986). *Fear of crime: Incivilities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Morenoff, J. D., Sampson, R. J., & Raudenbush. S.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 517-533.
- Sampson R. J., Raun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mpson R. J. & Raundenbush. S.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kogan, W. &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 Taylor, R. B. & M. Hale.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Will, J. A. & McGrath. J. H. (1995).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s,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163-176.
- Zhao, J. S., Scheider, M., & Thurman. Q. C. (2002).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 273-299.

A Study on the Literature about the Fear of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Disabled

Oh, Bong Yook*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gi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Chun, Dong Il**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provide basic data for safety policy plans for the population of the disabled, which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73 million across the nation, and search for measures to prevent their victimization and reduce their fear of victimization.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took interest in their safety needs and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ir victimization, hate crimes, and influential factors of fear of victimiz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were constantly subjected to crimes includ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ate crimes committed by their family members, residents, and welfare facility staffs. Second, there was a shortage of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victims with disabilities and also previous studies on them. Thir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fear of crime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general, altruistic, and specific fear of victimization: their general fear of crime was affected by gender, perception of vulnerability, direct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social disorder, number of businesses, collective efficiency, trust in the police, and policing; their altruistic fear of crime was influenced by age, perception of vulnerability,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social disorder, number of businesses, and unofficial participation in control; and finally, their specific fear of victimization was influenced by age, educational background, perception of vulnerability, physical disorder, social disorder, number of businesses, and policing in the community. There is a need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old investigations into the actual state of victimization among the disabled based on those findings to analyze their victimization cases.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active education pro-

* First Author,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gi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person76@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University (0117895103@naver.com)

grams to address the negative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by searching for customized intervention plans based on the improve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influential factors of fear of victimization.

The present study holds huge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take interest in the safety needs of the disabled, who are the weak in the society,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ir victimization includ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ate crimes, review the previous studies on their fear of victimization, identify problems accordingly, and make safety policy plans for them.

■ **key words** : The Disabled, Safety Needs, Violation of Human Right, Hate Crime, Fear of Crime

논문투고일 : 2017. 4. 30.

논문심사일 : 2017. 6. 19.

개재확정일 : 2017. 6. 28.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8, No. 1, 97-123.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강남장애인복지관 공연예술팀장 정 원 일
강남장애인복지관 공연예술팀원 김 윤 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개별 장애인의 선택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과 공연예술서비스의 선호도, 필요도, 만족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를 확인하여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와 연관성을 찾고 그에 따른 향후 사업구상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공연예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립정도, 선호도, 필요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사회적 자립, 선호, 필요성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기획운영하여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제언을 가지게 되었다.

주제어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선호도, 필요도, 자립생활

* 본 논문은 강남장애인복지관 2016년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는 문화가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향유의 기회로부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계층, 즉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y)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범위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시적 소외자들을 포괄한다.

인간은 생활 속에서 삶을 총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문화적 향유를 들 수 있다. 문화적 향유가 문화생활에 중요사항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며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문화적 복지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Peterson & Gunn, 1984).

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큰 흐름은 자립생활로, 기존의 전통적인 재활프로그램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표면적으로 자립생활과 의료 및 직업재활모델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미 설정해 높은 목표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지배(control)와 선택(choice)을 제한하였다. 반면 자립생활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목적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빼앗긴 지배권과 선택권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찾아주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별 장애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을 폭넓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문화예술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며, 최근 자립생활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문화예술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기평가지표 중 사회적 자립생활정도를 파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와 필요도에 대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연예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 필요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정도를 확인하여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와 연관성을 찾고 그에 따른 향후 사업구상에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둘째,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생활정도,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필요도, 만족도를 알아본다. 셋째, 사회적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밝혀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토대로 장애인 공연예술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문화권

장애인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활동(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작활동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 기회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손봉숙, 2006).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전병태, 200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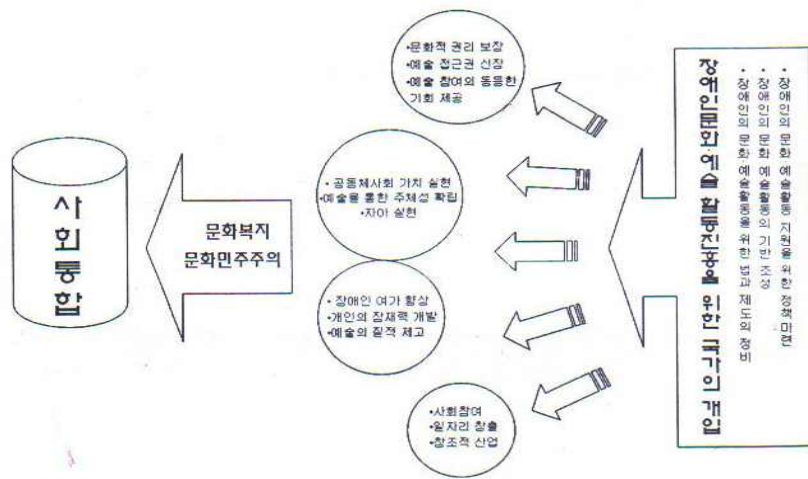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를 위해 제시한 “문화복지” 정

책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21세기의 화두로서 문화는 모든 국민의 삶에 문화복지와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창조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를 당사자 주의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화는 언제나 ‘부차적 권리’로 치부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를 ‘당사자 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게 된다.

첫째, 장애인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전병태, 2007)

셋째, 장애인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키워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성을 키워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지원방식이 아닌 ‘예술인’, ‘전문인’이라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가리킨다. 여가 활동에서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이 아마추어, 전문가로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전병태, 2010; 주윤정, 2011, 재인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제6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보고서(2013)에 의하면 장애인의 여가시간 활용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넘는 62.9%가 TV 시청을 1순위로 꼽았으며, 창작적 취미를 1순위로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0.5%에 불과하였다. 황주연(2008)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극/음악회/전시회 감상을 자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조사자의 9.4%인 14명에 불과하였다.

단순 여가가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적 치유(예술 치료)의 수단과 아웃사이더 아트 등 주류 예술 활동과 분리된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예술 치료는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서상태의 전환을 강조하여 기존의 장애인을 지배하는 치료-재활 패러다임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사이더 아트는 정신병 환자, 수형수, 노인 등이 기존의 예술적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작품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장애인의 타자성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장애인이 표현의 주체로 서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재인용).

2) 국내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한국에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정창권, 2005), 본격적인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근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이전에도 장애인 예술가 중 김기창 화백이나, 세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이 유명세를 탔지만, 장애인 예술 활동의 조직화나 장애인 문화 예술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장애인 예술, 그 중 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이 조직화되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연극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극회 월’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 극단으로 2001년 창단되어 2003년에 창단 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3년에 발족한 ‘장애여성공감’은 연극 및 미술 작품 활동을 통해 장애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장애여성 이슈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초기 활동의 특징은 장애인 연극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폭발한 장애인 인권 운동 속에서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강조하였다. 즉 문화예술을 통하여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였다(김원영, 2013).

그러나 이후 등장한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들은 여전히 대안적 운동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2007년 창단한 극단 ‘에인’은 ‘장애인만의 고유한 움직임과 표현’을 강조하는 극단으로, 일반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 연극이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극 단체 이외에도 2009년 창단된 ‘빛소리 친구들’은 음악과 무용 등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종 지체장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극단 ‘판’과 ‘장애인미디어아트’ 등이 새로운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황이 별도로 조사된 적은 없으며, 장애 예술인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혹은 개인의 수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07)에서 실시한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36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로 문학인과 미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장애 공연예술인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병태(2010)는 예술인 복지법 상에서 예술가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등록된 장애인 예술가 수만 파악하여 그 수는 199명 정도이며, 이 중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가의 수는 33명으로, 문학(52명), 미술(60명), 음악(54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수보다는 적은 수이나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1) 자립생활 패러다임

장애인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개인적 요소와 환경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으로 그 인식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도, 장애인의 개인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이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의 보장, 지역사회중심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지원, 환경의 개선 등이 보다 적절한 실천모델의 방향임이 인정되어 온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고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이념이자 모델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패러다임'이다(김동호, 2000).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발전된 이념이자 실천모델이다. 미국의 장애인정책은 시민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운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강력한 요구운동을 통해 그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자립생활운동이 시민권운동(The civil rights movement), 소비자운동(The consumer movement), 자조운동(The self-help movement), 탈의료화·자기보호운동(The demedicalization·self-care movement), 탈시설화·정상화·주류화운동(The deinstitutionalization·normalization·mainstreaming movement)과 같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때를 같이 하여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립생활운동이 기성체계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하거나 거부하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과 흐름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립생활운동은 지배적 사회구조와 그 내에서 장애인의 지위에 대한 명백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었다(Oliver, 1990). 자립생활의 본질적인 철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전반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립하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능력을 갖게 하는데 있다. Dejong(1979)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생활이 가지는 철학적인 개념의 핵심적인 주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 : 전문가가 아닌 서비스의 실제적인 소비자인 장애인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최적의 판단자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2) 자조(self-reliance) : 장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질과 창조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 (3) 정치적·경제적 권리(political and economic right) :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생활에 있어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장애인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인권 중심이라는 지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ejong(1981)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정책은 재활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었다.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일상의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없다는 것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재활패러다임이 설명할 수 없는 ‘변칙(anomaly)’이 나타나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전통적 재활과 자립생활 프로그램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 전환내용

항목	재활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등에의 의존/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재활과정에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사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옹호/자조/소비자주권/사회적 장벽의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 하는가	전문가	소비자
요구되는 결과들	최대한의 ADL/ 유급취업/심리적 적응/증대된 동기화	자기관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생산성(사회적, 경제적

2) 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인간이 자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상화 원리의 실

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Nirje(1972)는 「자기결정의 권리」라는 논문에서 “장애인에 의한 자기주장 실현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정상화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라고 장애인에 의한 자기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성명옥 역, 2004재인용).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자기결정권 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보장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다(김동호, 2007; 이경혜, 2000).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부모나 교사, 전문가 등의 역할은 안내자, 조력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한하며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질 권리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때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것이다.

둘째, 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다(김동호, 2007; 이경혜, 2000). 장애인이 겪는 문제가 신체적·정신적·의료적 차원에 그친다면 몰라도 환경과 부딪히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최적의 판단자임이 분명하다. 이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결과중심적인 체계에서 당사자가 서비스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중심적인 체계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다(김용득, 김미옥, 2007; 김용득, 최재성, 2000; 이경혜, 2000; 김종인, 1998). 장애인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프로그램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제대로 사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자기결정권이다(김용득, 박숙경, 2008). DCDB(Derbyshire Coalition of Disabled People)가 운영하는 DCIL(Derbyshire Center for Integrated Living)에서는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제인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전문가에 의한 ‘보호사정’ (care assessment)과 ‘사례관리’ (care management)는 장애인의 의존성을 증가 시켰으며, 융통성이 떨어지는 경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가 욕구사정을 하고, 스스로가 서비스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기사정’ (self assessment)과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Priestley, 1999; 김용득, 김미옥, 2007 재인용).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립의지가 필수적인데 자기결정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자립의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과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호와 필요성에 대한 자기 표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자립생활에 있어 매일 수행하는 활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는 것과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립생활 자기평가지표

미국의 NILS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립생활 측정도구로 일본휴먼케어협회가 개발하여 보급한 「자립생활에 대한 자기평가」 도구가 있다. 이 역시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와 성과를 판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일본 휴먼케어협회가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과정에 함께 제시하게 된 평가지이다(아사까, 나까니시, 1998:97).

이 평가 도구는 건강관리, 자기신뢰와 자기주장, 인생설계, 금전관리, 주거생활, 가정살림, 식사, 사회생활과 사교성, 시간관리, 권리와 정보, 개호서비스, 일(직업), 성, 차별과 장애운동 등 1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평균 9개의 문항(총 129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재훈, 2005). 이를 기반으로 국립재활원에서는 3개 영역 29개 문항으로 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자가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증, 사회적 기능으로 영역을 나누고 사회적 기능에 건강관리, 일상생활, 위생, 청결 등을 포함시켰으며, 정신적 기능에 자기신뢰, 자기결정, 감정관리, 긍정적 사고, 권익옹호 등을, 사회적 기능에는 대인관계, 시간 및 여가관리, 생활관리, 지역사회참여, 재정관리, 주거관리, 정보획득 등을 하부 항목으로 선정하여 각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김미경 외, 2005:153-156). 그러나 항목의 선정 기준과 자립생활 구성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동기, 2005b: 37). 타 당도의 경우, 전문가 4명의 안면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

고 신뢰도에 있어서도 조사결과에 따른 Cronbach's α 값만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타니구치아키히로 외(1999)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신체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 경제적 자립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첫 번째, 신체적 자립은 신체와 관련된 주변의 일을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내용은 ADL 달성도를 측정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심리적 자립은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스스로 행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자원체계인 가족, 이웃, 동료 등의 정서적 지지나 애정, 고충과 정보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자립은 사회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덕을 몸에 익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그것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은 취직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생활보호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정원일, 권소현, 2010,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모형

1) 연구설계

(1) 조사대상

이번 조사는 현재 장애인 복지관 공연예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실태와 전반적인 장애인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개별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시각장애인과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면접자가 대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9월부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3케이스 중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93케이스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방법으로 설문지(questionnaire)응답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은 응답당시의 상황이나, 응답자의 기분상태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면 총 32개의 문항으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		측정 내용	문항수
종속변수	□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지원체계만족도	5
		서비스만족도	6
독립변수	□ 자립생활정도	사회적 자립	10
	□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영역별 선호도	4
	□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필요도	7
	□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장애유형	6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 자립생활정도를 알아보고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본자립생활 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Human Cart Association의 자기평가지표’로 국립재활원(2000)에서 개발한 자가 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적 자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윤재성(2010)는 자립생활 측정도구의 자기평가척도에 대해 검증과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선호도,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서비스 질 척도(SERVPERF)의 타당도 연구’ 김용석 외(2009) 한국어판 SERVPERF의 질문내용을 발취하여 재구성하였다.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와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 조사설문지 신뢰도는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조사설문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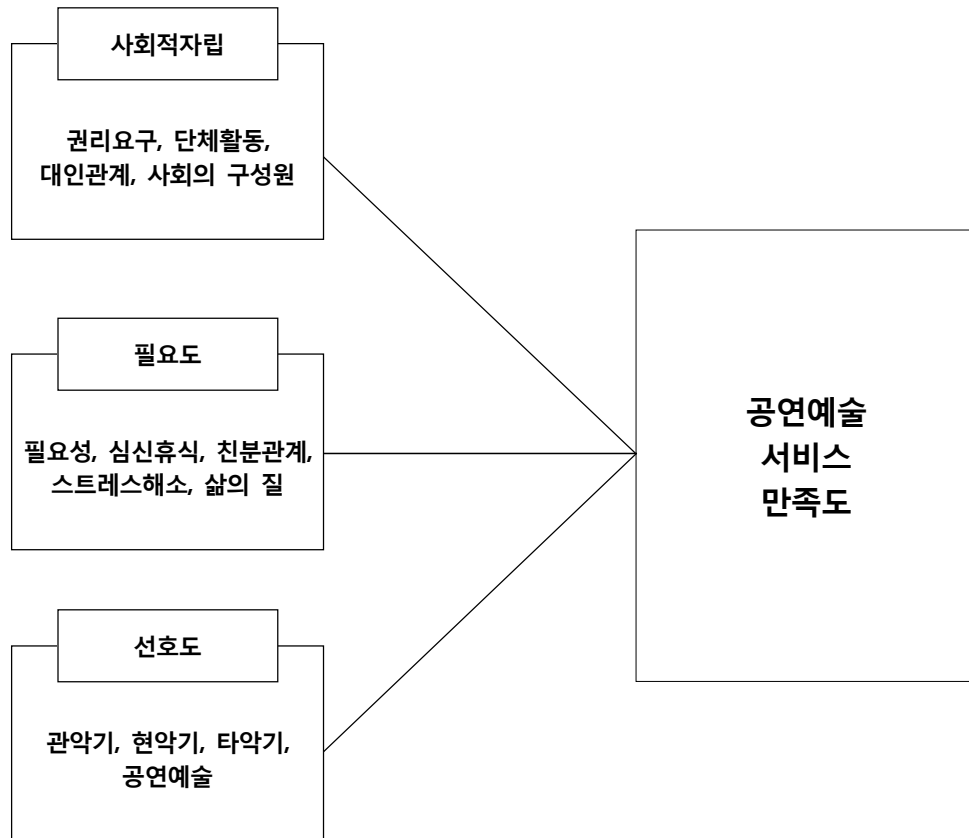
구분	요인	문항 수	하위요인신뢰도	구성개념 Cronbach's Alpha
자립생활정도	사회적자립	10	.625	.625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지원체계만족도	5	.754	.899
	서비스만족도	6	.863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영역별 선호도	4	.737	.737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필요도	7	.920	.920
전체 설문문항		38	.843	

(3)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사회적자립정도, 공연예술필요도, 선호도가 공연예술프로그램 만족도 관련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로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한 내적 일관성분석을 실시하여, 알파(a)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한 다음,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공연예술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제4장 조사결과 및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연구모형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일반적 특성 및 신뢰도 검정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응답자의 58.1%, 여성은 41.9%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경우, 50대 이상이 12.9%, 40대가 5.4%, 30대가 7.5%, 20대가 19.4% 10대가 28.0%로 나타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는 26.9%, 시각장애가 10.8%, 뇌병변장애가 17.2%, 발달장애가 36.6%, 청각·언어장애가 1.1%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는 만 0세~10세가 52.7%, 만 41세~60세가 14.0%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은 1급 41.9%, 2급 31.2%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54 58.1
	여	39 41.9
연령	10대	26 28.0
	20대	18 19.4
	30대	7 7.5
	40대	5 5.4
	50대	12 12.9
	60대	20 21.5
	70대 이상	5 5.4
장애유형	지체장애	25 26.9
	시각장애	10 10.8
	뇌병변장애	16 17.2
	청각·언어장애	1 1.1
	발달장애	34 36.6
	정신장애	2 2.2
	신장·심장장애	1 1.1
	기타	4 4.3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 분		빈도	퍼센트
장애등급	1급	39	41.9
	2급	29	31.2
	3급	15	16.1
	4급	4	4.3
	5급	2	2.2
	6급	2	2.2
장애원인	선천적	50	53.8
	사고	8	8.6
	질병	14	15.1
	노환	1	1.1
	원인불명	14	15.1
	기타	6	6.5
장애발생시기	출생전/출생시	19	20.4
	0세~10세	49	52.7
	11세~20세	6	6.5
	21세~40세	3	3.2
	41세~60세	13	14.0
	61세이상	3	3.2

2) 사회자립도

사회자립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매우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 그저 그렇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사회자립의 빈도분포는 〈표 5〉와 같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 받는다’에서 매우 그렇다가 53.8%로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다’ 는 매우 그렇다가 28.0%로 나타났다.

사회자립도의 전체 평균은 3.32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자립의 세부 영역 문항 중에서 ‘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 받는다’ 평균으로 4.28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친구집이나 이웃집을 자주 방문한다’ 평균으로 2.559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사회적 자립도에서 이웃간의 관계보다 가족중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자립도

문항	1	2	3	4	5	평균
1. 나는 사람들(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2 (2.2)	2 (2.2)	18 (19.4)	49 (52.7)	22 (23.7)	3.935
2. 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권리라고 생각한다	3 (3.2)	4 (4.2)	14 (15.1)	34 (36.6)	38 (40.9)	4.075
3. 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 받는다	2 (2.2)	6 (6.5)	6 (6.5)	29 (31.2)	50 (53.8)	4.280
4. 나에 대해 다른 사람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다	5 (5.4)	9 (9.7)	25 (26.9)	28 (30.1)	26 (28.0)	3.656
5. 나는 이웃들과 잘 알고 지내지 못한다	5 (5.4)	28 (30.1)	37 (39.8)	17 (18.3)	6 (6.5)	2.903
6. 나는 친구집이나 이웃집을 자주 방문한다	19 (20.4)	32 (34.4)	20 (21.5)	15 (16.1)	7 (7.5)	2.559
7. 나는 지역의 일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극장, 백화점)	4 (4.3)	14 (15.1)	22 (23.7)	30 (32.3)	23 (24.7)	3.581
8. 나는 장애인관련단체나 장애인모임에 참여한다	12 (12.9)	19 (20.4)	20 (21.5)	26 (28.0)	16 (17.2)	3.161
9. 나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8 (8.6)	18 (19.4)	31 (33.3)	25 (26.9)	11 (11.8)	3.140
10. 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	12 (12.9)	15 (16.1)	27 (29.0)	32 (34.4)	7 (7.5)	3.075
사회자립도의 평균	3.3287					

3)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매우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 그저 그렇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의 빈도분포는 〈표 6〉과 같다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의 설문문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첫 번째는 문항의 1번~6번까지는 서비스지원체계의 만족도이며, 두 번째 7번~11번까지는 공연예술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지원체계 만족도에서는 ‘참여하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 만족하십니까?’에서 35.5%가 매우 만족으로 답하였다. 또한 접수방법에 대한 만족과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에서도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도에서는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강좌의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서 29.0%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강하였지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문 항	1	2	3	4	5	평균
1. 접수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4.3)	6 (6.5)	23 (24.7)	46 (49.5)	14 (15.1)	3.6452
2. 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5.4)	17 (18.3)	46 (49.5)	25 (26.9)	3.9785
3.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에 비해 이용요금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1.1)	23 (24.7)	42 (45.2)	27 (29.0)	4.0215
4. 시설의 안내 및 홍보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1.1)	5 (5.4)	26 (28.0)	45 (48.4)	16 (17.2)	3.7527
5. 이용자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의 반영정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4.3)	8 (8.6)	23 (24.7)	39 (41.9)	19 (20.4)	3.6559
6. 참여하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8 (8.6)	12 (12.9)	40 (43.0)	33 (35.5)	4.0538
7.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교육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3.2)	4 (4.3)	16 (17.2)	43 (46.2)	27 (29.0)	3.9355
8.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활용정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3.2)	1 (1.1)	28 (30.1)	37 (39.8)	24 (25.8)	3.8387
9.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귀하의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3.2)	11 (11.8)	46 (49.5)	33 (35.3)	4.1720
10.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1 (1.1)	3 (3.2)	20 (21.5)	45 (48.4)	24 (25.8)	3.9462
11. 시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노력정도(프로그램제공이나 시설개방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 (6.5)	37 (39.8)	34 (36.6)	16 (17.2)	3.6452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평균	3.9200					

4)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매우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 그저 그렇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의 빈도분포는 <표 7>과 같다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의 설문문항은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와 그 외 분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면 그 결과로 현악기분야와 타악기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32.3%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7>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문항	1	2	3	4	5	평균
1. 현악기분야(피아노, 기타, 바이올린등)를 원한다	10 (10.8)	5 (5.4)	18 (19.4)	28 (30.1)	30 (32.3)	3.6923
2. 타악기분야(드럼, 난타, 사물놀이등)를 원한다	9 (9.7)	5 (5.4)	13 (14.0)	33 (35.3)	30 (32.3)	3.7778
3. 관악기분야(플룻, 리코더, 하모니카, 색소폰등)를 원한다	10 (10.8)	7 (7.5)	23 (24.7)	30 (32.3)	22 (23.7)	3.5109
4. 음악분야 이외(무용, 복합예술등)를 원한다	13 (14.0)	8 (8.6)	24 (25.8)	29 (31.2)	17 (18.3)	3.3187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 평균	3.5478					

5)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매우 아니다, 2 : 대체로 아니다, 3 : 그저 그렇다, 4 : 대체로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의 빈도분포는 <표 8>과 같다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의 설문조사 결과는 ‘공연예술 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하다’에서 46.2%가 매우 그렇다 로 답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에서 45.2%가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공연예술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문항	1	2	3	4	5	평균
1. 본인에게 공연예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3.2)	5 (5.4)	13 (14.0)	37 (39.8)	35 (37.63)	4.0323
2. 누구에게나 공연예술 활동은 필요하다	4 (4.3)	5 (5.4)	17 (18.3)	37 (39.8)	30 (32.3)	3.9032
3. 공연예술 활동은 심신의 휴식을 위해 필요하다	3 (3.2)	2 (2.2)	11 (11.8)	42 (45.2)	35 (37.6)	4.1183
4. 공연예술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3 (3.2)	2 (2.2)	8 (8.6)	43 (46.2)	37 (39.8)	4.1720
5. 연예술 활동은 친분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하다	2 (2.2)	1 (1.1)	19 (20.4)	37 (39.8)	34 (36.6)	4.0753
6. 공연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2 (2.2)	3 (3.2)	11 (11.8)	35 (37.6)	42 (45.2)	4.2043
7. 공연예술 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하다	1 (1.1)		14 (15.1)	35 (37.6)	43 (46.2)	4.2796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평균	4.1121					

2. 연구조사 분석

1)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선호도, 필요도와 자립생활정도의 상관관계분석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 9〉와 같다.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와 전체자립도, 전체선호도와 전체 필요도 모두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표 9〉 자립도, 선호도, 필요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구분	전체만족도	전체자립도	전체선호도	전체필요도
전체만족도	1			
전체 자립도	.304(**) .003	1		
전체 선호도	.260(*) .014	.339(**) .001	1	
전체 필요도	.291(**) .005	.500(**) .000	.438(**) .000	1

*** p<0.001, ** p<0.05, *p<0.1

3. 조사분석내용

1)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자립생활정도와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0> 과 같다. R제곱 값은 .093으로 9.3%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F값이 9.175로서 유의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자립생활정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3.029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55	.489		5.018	.000
사회적 자립생활정도	.426	.141	.304	3.029	.003

R제곱=.093, F=9.175, p-value=.003

*** $p < 0.001$, ** $p < 0.05$, * $p < 0.1$

2) 선호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호도 정도와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1> 과 같다. R제곱 값은 .115으로 11.5%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F값이 11.172로서 유의수준($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선호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3.342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호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선호도 정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954	.290		10.171	.000
선호도	.264	.079	.339	3.342	.001

R제곱=.115, F=11.172, p-value=.001

*** $p < 0.001$, ** $p < 0.05$, * $p < 0.1$

3) 필요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요도 정도와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R제곱값은 .250으로 25.0%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F값이 30.026로서 유의수준($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필요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5.480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전체필요도 정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05	.374		5.095	.000
필요도	.488	.089	.500	5.480	.000

R제곱=.250, F=30.026, p-value=.000

*** $p < 0.001$, ** $p < 0.05$, * $p < 0.1$

V. 결론 및 제언

장애인 공연예술서비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장애인에게 공연예술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 문화예술 관련 복지관과 장애인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장애인의 문화관련 프로그램과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가 공연예술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Ⅱ장에서는 장애인의 문화권, 공연예술활동에 대해 살펴보았고,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의 사회적 자립생활유형과 개별 장애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의 확대를 선호도와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로 남성은 58.1%, 여성은 41.9%이며 연령은 10대 28.0%, 장애유형은 발달장애 36.6%, 장애등급은 1급 41.9%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의 연령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립생활 정도의 평균 3.328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선호도로 타악기와 현악기분야가 32.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예술서비스 필요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립생활정도, 선호도, 필요도가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 사회적 자립생활정도와 필요도 향상을 위한 사업 계획

사회적 자립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연예술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공연예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공연예술사업 방향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모임과 같이 공연예술활동을 통해 친분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단체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제언한다.

2. 선호도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강화와 신규프로그램 개설

공연예술서비스 영역을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복합예술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공연예술서비스 선호도에 따른 공연예술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회귀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연예술 사업에 대해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첫 번째, 기존 아동영역과 성인영역으로 구분되어진 공연예술사업 내용을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복합예술 영역의 변화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두 번째, 타악기 영역으로 기존 드럼, 사물놀이, 난타 수업의 확대와 신규 타악기 프로그램으로 까혼, 쟈뎬, 웨이크 수업 등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의 문화생활 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관 공연예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재가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호, 2000,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한국적 모색”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마들 대학자료집.
- _____, 2007,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Living)과 한국적 과제.”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포럼 자료집.
- 김원영, 2013, “방법론으로서의 장애예술과 그 가능성의 모색,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안”, 장애인문화예술연구소 짓.
- 김용석 최종복 황성혜 김민석 서인자, 2009, “서비스 질 척도(서브퍼프)의 타당화 연구 :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107~135.
- 김용득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4호.
- 변소현, 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주하, 2005, “장애인 문화 활동의 중요성에 기초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성명옥 역, 2004, “정상화원리의 연구.창지사”中國康夫저1996
- 이경혜, 2000,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 1990, “한국장애자의 이해”, 「재활」, 통권35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전혜선, 2009, “장애인 공연예술단체의 재원조성 방안 - 한빛예술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전병태, 2010,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윤정, 20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미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토론회 발표문, 문화체육관광부.
- 정갑영, 1996,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타가구치아키히로, 1999, “자립생활을 즐겁고 구체적으로”이기량, 최경익 옮김. 나눔의 집.
-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에이브아트 - 차이와 소통의 예술”, 경기문화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7,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고용패널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황주연, 2008, “여성장애인이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ker, R. L., 1996, 「사회사업사전」,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이론과 실천.
- Dejong, G.,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s,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Kondrat, M. E., 1999, "Who Is the 'self' in Self-Aware: Professional Self-Awareness from 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 Nirje, B., 1972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 Nosek, M. A., 1988.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Rubin, Stanford E. & Rubin, Nancy M.(ed),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fession,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The Macmillan Press.
- Saleebey, D., 1996,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Y : Longman.
- Weinberg, N., 1983. "Social Equity and the Physically Disabled" Social Work.
- Wolfensberger, W. & S. Tullman, 1982, "A brief outline of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A Study on the Effect of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and Satisfaction Level of Performing Arts Services: Focusing on Users of Disabled Welfare Center

Jung won-il

(Manager of Performing Arts Team, Disabled Welfare Center of Gangnam)

Kim yu-mi

(Member of Performing Arts Team, Disabled Welfare Center of Gangn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social independent living and preferenc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performing arts services as the right of choic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sing disabled welfare center has been increasing.

In addition, by confirming the degree of independent living, preference and necessity of disabled people using the welfare center, it is aimed to find out how those are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performing arts services and to utilize it as objective data for a future business plan.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we surveyed about 100 users who are receiving the performing arts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ov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independence, preference and necessit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performing arts services, which means that they affect each other.

In other words, I have propos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erforming arts services by strategically planning and operating services and programs for social independence, preference, and necessity in cultural arts activities of the handicapped.

Key words : Arts and culture of the handicapped, Performing art service, satisfaction, preference, necessity, Independent Living(of the handicapped)

논문투고일 : 2017. 4. 27.

논문심사일 : 2017. 6. 19.

게재확정일 : 2017. 6. 28.

원고투고요령

1. 원고투고요령

「장애인복지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관련 주제에 대해 25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 및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 때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2. 발간 횟수 및 발간일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횟수는 연2회로 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투고 시기

장애인복지연구의 원고는 상시 투고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시간과 발간일을 고려하여 6월 30일 발행본은 4월 30일, 12월 31일 발행본은 10월 31일에 원고 접수를 마감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제출처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 담당자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E-mail: jggmskh@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규칙

제 정 2017. 02. 06.

제1장 논문투고

제1조(투고자격) 「장애인복지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관지로서 투고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조(투고내용) ① 원고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임상, 장애학, 장애문제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한다.

② 게재할 논문은 어떠한 표절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중복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게재 가능하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발간일정) ① 발간일정은 연2회 정기적(6월 30일, 12월 31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접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다.

1. 6월 30일 발행분 : 4월 30일

2. 12월 31일 발행분 : 10월 31일

③ 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 한다.

제4조(논문제출) ①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②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를 통해 공지한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④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투고된 논문의 성격이 본 지와 맞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제5조(저작권) 본 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지가 소유하게 되며, 본 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6조(작성 요령) ① 논문의 매수는 A4용지 16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학술지 페이지 제한은 25쪽 이내 이며, 1쪽 추가 시 1만원씩 추가 부담한다.

② 원고작성 요령 [별지1]의 논문작성 요령과 같으며, [별지1] 이외의 원고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준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복지연구』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정책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장 논문심사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편집위원)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된 원고 사본을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기본 심사양식인 논문심사평가서〈서식 2〉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③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④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⑤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2] 심사판정표에 따라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⑥ 5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3〉과 함께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3〉과 함께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 제12조(편집 확정)**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타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 ④ 동일인(주저자·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⑥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신청 및 재투고)** ①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2017 · 2 · 6〉

-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연구」 논문작성법

1. 논문의 순서

모든 논문은 아래 제시된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으로, 국문초록을 뒤로 배치하되 국문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 ① 논문제목
- ② 저자성명(소속 및 지위)
- ③ 국문초록(500자 이내) 및 주제어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영문초록(250단어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주제어 순)
- ⑦ 부록(필요한 경우)

2. 분량 및 용지설정

- 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2002 이상)로 작성하며, 논문의 분량(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포함)은 25쪽 이하로 작성한다.
- ②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종류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글자모양	글꼴: 휴먼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0%
문단모양	정렬방식: 혼합 문단여백: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2(space bar)	줄간격: 160% 문단 위: 0pt, 문단 아래: 0pt 최소공백: 100%

3. 저자 성명

- ①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소속과 지위는 각주 처리하여 표기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4. 국문초록

-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한국 600자 또는 A4 1/2 분량으로 한다.
- ②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 (휴먼명조 10pt, 네모 틀 안)

주제어 : 수요자 중심주의, 직업재활서비스, 연계(휴먼명조 9pt, 진하게, 주제어 3개 이상)

5. 영문초록

- ① 영문초록은 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②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직위, 소속), 요약, Key words 순으로 작성한다.

6. 본문

-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 항목순서 : I. → 1. → 1) → (1) → ① → 가.
- 항목설정

I.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휴먼명조 14pt, 진하게

1) 휴먼명조 12pt, 진하게

(1) 휴먼명조 11pt, 진하게

① 휴먼명조 11pt

가. 휴먼명조 11pt

- ④ 표와 그림은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표 그림	글꼴: 휴먼명조 크기: 9pt 줄간격: 130% 선모양: 위, 아래(0.4mm)	표(그림) 제목 글꼴: 휴먼명조 표(그림) 제목 크기: 10pt
		표 단위 글꼴: 휴먼명조 표 단위 크기: 9pt 표 단위 정렬: 표 위 오른쪽 (예) (단위 : %, 명)

7. 문헌의 인용

① 본문 내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간행물 혹은 편집된 저서에 실린 단일 문헌의 경우의 표기

- 본문에서 저자와 연도만을 표기한다(예 1).
-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 연도에 이어 쪽수를 표기한다(예 2).

예1) ...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이희성, 장성만, 1992).

예2) ...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애, 2000, pp. 77-80).

☐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의 표기

- 국내 문헌의 경우 자료 출처에 있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그대로 본문 내에 기입한다. 국내 저자의 경우 저자의 이름이 논문 중에 나오면 저자의 성명을 쓰고 출판 연도는 성명 옆에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이남순(2006)은 아동들의 관심이 수업에 반영되었을 때, ...

예) Hoffman(1980)은 남성보다 여성이 도덕적 원리를...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할 내용의 문장을 끝낸 후 마침표를 찍기 전에 괄호 안에 완전한 저자명(단,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저자의 성만)과 연도(,) 그리고 출판 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이남순, 2006).

예) 민감성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amon, 1986).

☐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의 표기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서 인용했을 때는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가 인용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예 1).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에 괄호로 묶어 처리했을 때는 한국 문헌과 동양 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 문헌의 경우는 ‘&’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연구물은 세미콜론(;)으로 서로 다른 연구임을 표기한다(예 2).

예1) 강영숙과 고윤주(1992)는... / Dobson과 White(2006)는...

예2) ...라고 주장하였다(강영숙, 고윤주, 1992; Dobson & White, 2006)

-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에만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며(예 1), 두 번째 인용할 때부터는 첫 저자명만 쓴다(예 2).

예1) 김상희, 박성연, 이옥경(2006)의 연구에서는... / ..을 분석한 연구(김상희, 박성연, 이옥경, 2006)에서는...

Liben, Mandler, Nelson, 와 Norder(1997)등은... / 연구자들(Liben, Mandler, Nelson, & Norder, 1997)은...

예2) 김상희 등(2006)의 연구 결과... / Colman 등(1997)은...

-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첫 저자명만 쓰는데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 라고 쓴 후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없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에는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예) 최근 연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6)에 의하면... / 외국의 연구(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7) 결과는...

□ 재인용

-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예1).
- 저자명이 본문 중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 출처의 저자명과 이 자료의 출판 연도를 적고 출판 연도에 이어 “에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예2).
- 괄호 안에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가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는 쉼표로 구분하고 원전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하고 재인용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적고 “에서 재인용”이라고 적는다(예3). 이를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할 때는 재인용 문헌만을 표기하면 된다.

예1) 이희성(1990: 권양희, 1998에서 재인용)은...

예2) ...을 제시하였다(Hoffman, 1979: 김경혜, 1991에서 재인용).

예3)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aharish, 1951: Gordon, 1989에서 재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 동일인에 의한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때는 출판 연도 순으로(인쇄중인 것은 맨 끝에) 오려진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하여 제시한다(예 3).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도 같은 요령으로 수록한다.

예1) 선행 연구들(나영대, 김승기, 1992, 1999, 인쇄중)에서...

예2) 선행 연구들(Hill & Cochran, 1996, 1997, in press)에서...

예3) 최근 연구(천명기, 1999a, 1999b)에서는...

- 한 괄호 안에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두 개 이상 표기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연구들을 구분한다.

예) 여러 연구(장근영, 1998a, 1998b; 홍성기, 1999; Allen, 1981)에서는...

□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될 경우

- 국내 문헌, 동양 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서), 서양 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예) 여러 연구들(장시철, 2000; 한가람, 1994; Elkind, 1991; Mussen, 1995) 등에서...

8.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일반적인 원칙

-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 책명은 국문의 경우에는 고딕체(Gothic)로,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Italic)체로 한다. 단, 고딕체나 이탤릭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밑줄로 대신한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 칸씩 뗀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출판 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 단행본의 경우

•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예)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예)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 (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예)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예) Coltheart, M., Curtis, B., & Lyon, S. (1996). *Oxesi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Inc.

• 편집한 서적인 경우

예) 이정한, 남주성(편)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예)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예) 이정한, 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예)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번역서인 경우

예) Crane, W. C. (1983).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예) Sartre, J. P. (1958). *Being and nothingness*. (H. E. Barnes, Tra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예) 백석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천안: 백석대학교.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았을 경우, 학술발표 연월일과 장소를 기입하고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이건우 (2000).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갈등: 세기말의 힙합문화를 중심으로. 심포지움 대중 문화의 시대 발표 논문. 3월 8일. 서울: 세종 문화회관. 미간행.

□ 정기간행물인 경우

•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

: 학술지 및 권(volume)에만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한다.

: 쪽의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쪽을 나타내는 기호인 pp. 를 쓰지 않는다.

예) 황윤환 (1995).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237-252.

Lapp, D., & Flood, J. (1994). Integrating the curriculum: First steps. *The Reading Teacher*, 47, 416-419.

-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인 경우: 기고자(寄稿者)가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김미연(2000.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주간지, 일간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column), 기사(記事)인 경우
: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출추는 대학입시. (1996. 3. 6.). **한국교육신문**, p. 2.

- 기고자가 밝혀진 경우

예) 김철수. (2002. 8. 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6.

예)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공선옥 (1997, 가을).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82-137.

☐ 학위논문의 경우

예) 이진희 (1997).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천안.

예) Wiebe, M. J. (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a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 초록 문헌의 경우

예) 한덕웅, 이경성 (1999). 대학생의 신체 질병을 예언하는데 관련된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pp. 190-193. 8월 19일. 서울: 연세 대학교 제 2 인문관.

예) Woolf, N. J., Young, S.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Society for Neuroscience*, 17, 480. [Abstracts]

☐ 재인용 자료들의 제시

예) [본문에서는] 김혜숙(1990; 김혜숙,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인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9. 논문저자 및 심사정보 표시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시 초록 하단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교신저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일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그대로 게재’ 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까지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편집위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실장)
김경미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신현욱 (전주대 재활학과)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권순용 (제주국제대 사회복지학과)
남진열 (제주대 행정학과)

〈기획·편집〉

송기호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8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 행 일 : 2017년 6월 30일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발 행 인 : 황화성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9567

홈페이지 : www.koddi.or.kr

인 쇄 처 : (사)다움복지회
